

2024 한국중견기업학회 추계학술대회

중견기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쟁점

일시 | 2024. 11. 22 (금) 13:00 ~ 18:00

장소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층 모의법정

주최 | 한국중견기업학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한일산업금융법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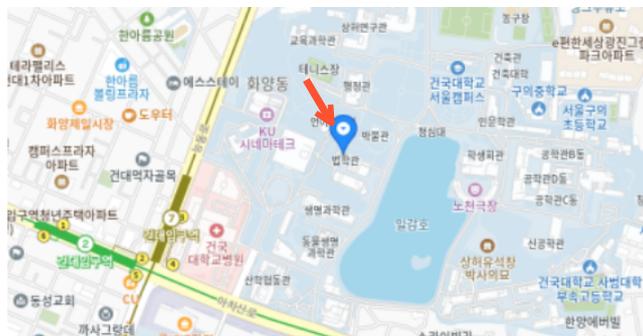
후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쟁점

프로그램

13:00~13:40	등록
13:40~14:00	20분 개회사 - 권중호 회장(한국중견기업학회) 환영사1 - 김병연 소장(건국대 법학연구소) 환영사2 - 이호준 부회장(한국중견기업연합회)
1주제 14:00~14:50	50분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확보 방안 사회: 김병연 교수 (건국대) 발표: 권용수 교수 (건국대) 토론: 강명원 (국회도서관), 김대홍 교수 (송실대)
2주제 14:50~15:40	50분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에 관한 연구 사회: 김병연 교수 (건국대) 발표: 구성권 교수 (명지전문대) 토론: 황헌순 교수 (계명대), 김신언 세무사 (엔트세무법인)
15:40~16:00	Break Time
3주제 16:00~16:50	50분 중견기업의 ESG 성과에서 정보공시와 재무적 요소의 관련성 연구 사회: 안성포 교수 (전남대) 발표: 전덕영 위원 (서울신용보증재단) 토론: 남궁주현 교수 (성균관대), 배승욱 대표 (벤처시장연구원)
4주제 16:50~17:40	50분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 정보공시 사회: 안성포 교수 (전남대) 발표: 김광록 교수 (충북대) 토론: 김영주 교수 (부산대), 조용규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17:40~	폐회

학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4. 11. 22. (금) 13:00~18:00**장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층 모의법정**주최** 한국중견기업학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사) 한일산업금융법포럼**후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1 주제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확보 방안

- 사회** 김병연 교수 (건국대)
발표 권용수 교수 (건국대)
토론 강명원 박사 (국회도서관)
김대홍 교수 (송실대)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확보 방안

건국대학교
권용수

목 차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02 중견기업의 인력 수급관리 실태 및 고용 애로 요인

1. 지역별 인력 수급관리 애로와 요구
2. 규모별 인력 수급관리 애로와 요구
3. 유형별 인력 수급관리 애로와 요구

03 중견기업 인력 수급관리에 관한 법 제도 현황과 과제

1. 현황
2. 과제

04 중견기업 현장 관점에서 본 향후 검토 과제

1. 입법적 관점의 검토 과제
2. 정책적 관점의 검토 과제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중견기업의 의의와 경쟁력 강화 필요성

- 2014년 중견기업법 제정 후 우리 경제에서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국가경쟁력 유지·강화 관점에서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또는 성장지원의 필요성이 강조
- 중견기업은 그 수가 전체기업 수의 1.3%(5,576사)에 불과하나, 전체 수출·매출·고용의 15% 내외를 담당하고 지역 경제와 투자를 주도하는 핵심적 경제주체(2022년 기준)
- 이상으로부터 중견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중견기업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중견기업법 개정(2023.3.10.)이 이루어짐

□ 중견기업의 성장 또는 경쟁력 강화를 저해하는 인력 문제 해소 필요

- 기업의 성장 또는 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인적 자원과 그에 대한 투자는 매우 중요한데,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 존재
- 첫째, 적합한 인재 부재, 임금·근로조건 열악, 지방 소재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신규 채용 곤란
- 둘째, 타 기업 스카우트 등에 따른 인력, 특히 전문인력 유지 곤란

□ 중견기업의 인력 수급·관리 문제 해결 방안 모색

- 중견기업의 인력 수급·관리 실태 및 고용 애로 요인 분석 등을 토대로 중견기업의 인력 수급·관리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중견기업의 인력 수급관리 실태 및 고용 애로 요인

01 들어가며

□ 중견기업의 인력 문제는 기업의 성장 또는 ESG 경영·디지털 전환 등에의 대응을 저해하는 핵심적 요인이나,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 구조 변화 속에서 해결방안 제시가 매우 곤란

- 기업이 기술혁신을 하거나 디지털 전환 등 산업 대전환에 대응하려는 경우 또는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경우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없는 상황이다.
- 경영진이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인적·물적 투자 여력이 없어 시도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담당할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계속 생존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중견기업으로서는 비용을 들여 새로운 인력을 확보한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에 따라 1달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도 기업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다.
- 현재 협력업체가 생산을 담당하는 상황인데, 디지털 전환 추진 시에 협력업체 직원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게 가능한가라는 문제도 존재한다. 협력업체의 경우 인력 유입이 안 되면서 직원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협력업체에 디지털 전환 관련 사무를 추가하는 게 현실적으로 적절한지 의문이 있다.

02 지역별 인력 수급관리 애로와 요구

□ (비수도권 경제활동인구 감소)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가 2018년부터 감소로 돌아섰고, 수도권-비수도권의 생산연령인구 격차가 심화

- 일극 집중 현상 심화와 지방소멸 가속화 속에서 비수도권의 생산연령인구(특히 고학력 청년층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현저
 - 통계청 2021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의 경제활동인구 중 수도권 거주자가 60.3%로 전체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중 수도권 거주자 비중 57.5%보다 높았음

□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감소)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의 취업 의향이 거의 없는 수도권 구직자 비율이 대략 70%에 달함

- 비수도권 기업에의 취업 유인책으로 급여 인상이 중요한데, 자금 사정 등이 좋은 않은 지방 소재 초기 중견기업은 급여 인상 여력이 없는 상황

02 지역별 인력 수급관리 애로와 요구

- (수도권 소재 기업은 인력 '관리',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인력 '수급·관리'가 심각한 문제)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은 특히 전문인력 수급·관리 문제가 심각한 면이 있고, 인력 '수급'부터 문제 되는 경향이 강했음
 - 인력 수급·관리 문제가 심각한 지방 중견기업에 대한 과감한 우대 조치(혜택 차등 및 강화, 대학 등 연계 프로그램, 현지법인의 숙련도 외국인 근로자 활용 등) 검토 요구

- 중견기업은 인력 채용보다 인력 유지·관리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이해하고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혜택 부여 방안 검토가 중요

03 규모별 인력 수급관리 애로와 요구

-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 결과, 중견기업에는 ① 중소기업과 별반 다르지 않은 중견기업과 ② 대기업에 근접한 중견기업이 혼재
 - 이 때문에, 중견기업 규모별 인력 수급·관리 애로와 요구에 상당한 차가 존재

- ①의 중견기업은 인력 수급·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규제 문제로 중소기업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예도 있음
 - 이들은 인적·물적 여력이 없어 인력 문제에 자체적 대응이 어려움 상황

규모별 인력 수급관리 애로와 요구

- ②의 중견기업은 인력 수급 등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대기업과의 경쟁 또는 해외 진출 시 다국적기업과의 경쟁 과정에서 인력 수급·관리 문제에 직면하는 예가 확인됨
- 이는 우리 중견기업의 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해 해외 진출 시 인력 수급·관리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

〈애로사항〉

- 최근 우리 기업의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에서는 테슬라의 공장 신설로 인력 수급·관리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30%가량의 급여 인상을 선택한 바 있다.

〈요구사항〉

- 인력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함으로써 기업의 다양한 인력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예컨대, ① 중견기업보다 신용 높은 정부가 해외 근로 희망 인력을 모집하고 해외 진출 기업이 필요에 따라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② 졸업 예정자나 신규 졸업자의 채용 연계를 염두에 둔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유형별 인력 수급관리 애로와 요구

- 노동집약적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의 인력 수급·관리 문제 현저
- 노동집약적 제조업은 해당 산업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청년층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과 맞물려 인력 '수급'부터가 어려운 상황
- 노동집약적 제조업 기업은 인력 문제로 생산거점을 해외에 두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해당 기업의 인력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공동화, 지역 경제 침체 등을 불러올 수 있음을 시사
- 노동집약적 서비스업도 인력 수급·관리 문제가 심각한 경향이 있고, 특정 영역 등에서 특히 문제가 심화하는 경향이 있음
- 소비 패턴과 산업환경 급변 속에서 안전 관리, 자동화 구축, 개발, 운송 등에 관계된 인력 부족이 특히 심한 상황

가

- 중견기업의 경우는 대다수 유형에서 인력 수급·관리 문제가 확인됨
 - 예컨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도 인력 수급·관리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
 - 청년층의 대기업 선호 현상이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부터 업종에 따라서는 전공 무시하고 인력 수급에 대응하는 등의 모습을 보임

중견기업 인력 수급관리에 관한 법 제도 현황과 과제

01 현황

□ 중견기업 인력지원 등에 관한 법령 강화 추세

- 예컨대, 2024년 1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2025년 1월 시행) 제정되었고, 첨단 산업 분야 중견기업의 인재 확보 지원 등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 마련
- 조세특례제한법의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지원 세제 혜택이 점차 강화되고, 2022년 12월 개정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규정 신설

- 그런데 중견기업 인력지원 법령을 보면 ① 선언적 성격을 지닌 규정이 적지 않다는 것, ② 특정 중견기업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적지 않다는 것, ③ 중소기업과 그 실질이 다르지 않은 중견기업을 배려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 ④ 중견기업의 인력지원은 '수급' 외에 '관리' 관점 지원이 필요하나 해당 관점의 지원 규정이 없다는 것 등의 문제도 존재

01 현황

- (① 관련) 중견기업법 제20조 등에서는 정부가 중견기업의 인재 확보·유치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
 - 산업기술혁신법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중견기업에 대한 파견인력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동법 제34조의2 제3항), 일정 수준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등 해당 규정의 실효성 의문
 - 기업활력법은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중견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차원에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동법 제30조), 해당 규정은 선언적 규정에 그치는 면이 있음

01 현황

- (② 관련) 중견기업법을 제외한 법령 대다수는 뿌리산업, 첨단산업, 사업재편 승인기업 등 해당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거나 지원의 필요성이 큰 특정 범위 내 중견기업의 인력 지원만 뒷받침
 - 중견기업법도 모든 중견기업의 인력지원(법 제17조의3 및 법 시행령 제9조의4)에 관한 규정 외에, 평균매출액 등이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인력 지원(법 제17조의8 및 법 시행령 제9조의9)만을 상정한 규정을 두고 있음
- (③ 관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액공제 등이 상당 정도 축소되는 경향이 있고, 그 결과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문제 등이 발생
 - 2022년 중견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한 중견기업은 5.3%였고, 그 핵심적 배경에는 조세지원 축소(61.6%)가 있었음

02 과제

- 중견기업 인력 수급·관리 실태와 현행법 제도를 토대로 다음 사항 고려 필요
 - 초기 중견기업 또는 특정 업종·산업을 넘어 지역별·규모별·업종별 중견기업 인력지원 방안 검토 필요
 - 인력난이 심각한 지방 소재 중견기업을 염두에 둔 법 정책 강화라든지, 규모별 특성에 배려한 법 정책 검토 등
 - 중견기업은 인력 '수급' 면보다 인력 '관리' 면에서 애로를 겪는 예가 적지 않음을 이해하고 '관리' 관점의 인력지원 방안 검토 필요
 - 내일채움공제 일부 유형이 폐지되는 등 장기근속에 이바지하는 방안 축소 등의 당위성 검토 등
 - 중견기업 중에는 중소기업과 실질이 다르지 않은 기업이 존재한다는 점 인식 필요

중견기업 현장 관점에서 본 향후 검토 과제

입법적 관점의 검토 과제: 인력 수급관리에 이바지하는 규정 정비

① 중견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에 배려한 지원 방안

□ 중견기업은 인력 문제를 위해 ① 채용 단계(대학 등 외부 기관과의 협업, 채용설명회 설명 방식 재검토, 채용 인력의 다양화 등), ② 정착·관리 단계(평가·취우 개선(성과연동 보상 등), 교육 훈련, 노동조건 재검토, 조직문화 개선 및 복리후생 등)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한계 존재

□ 중견기업의 규모·업종·지리적 위치 등에 따른 인력 수급·관리 문제 상이, 한정적 자원, 중소기업과의 관계 등을 생각하면 중견기업 규모나 업종(업무), 지리적 위치 등과 우리 경제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과감한 차등적 지원 근거 마련 검토

○ 예컨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지역 소멸 문제로부터 지방 소재 중견기업의 지원·육성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중견기업법에 지방 소재 중견기업을 달리 취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그에 맞춰 특례 등을 정비하는 방안 검토

- 인력 문제는 근로자(일반 국민의 생활)와 관계가 있는 쟁점임을 인식 필요

입법적 관점의 검토 과제: 인력 수급관리에 이바지하는 규정 정비

② 근로자의 적절한 이익 향유에 배려한 지원 방안

□ 중견기업의 노력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려면 중견기업의 경제적 혜택 제공 등이 적절히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구조 검토 필요

○ 예컨대,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다양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두고 있는데, 중견기업 포함 범위를 재검토하거나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 검토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확대

* 근로자의 생활 안정화 등을 생각하면,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소득세 50%를 감면하는 제도(조특법 제19조 제2항)의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방안 등 검토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입법적 관점의 검토 과제: 성과연동형 보수 활용에 이바지하는 제도 정비

- 중견기업은 프로젝트 성과나 기업 성과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줌으로써 우수 인력의 적극적인 행동과 장기근속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목표 달성을 꾀하는 예가 있음
- 중견기업도 RSU 등을 활용하는 예가 있는데(크래프톤), 활용상 제약 존재
 -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RSU 주식 교부 곤란
 - 현행 상법에 따르면 특정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배당가능이익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중견기업은 성과연동형 보수 활용이 곤란
 - 신주발행을 통한 RSU 주식 교부 곤란
 - 주주가 아닌 이사 등에게 RSU로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하나(상법 제418조 제2항),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 충족 필요
 - 또한, 신주발행 시 신주 인수 대가로서 임직원의 노무 출자가 허용되지 않고 금전이나 현물 출자가 필요한 점에서 성과연동형 보수 활용의 의미가 희석될 수밖에 없고 대량의 신주발행이 필요해져 기존 주주의 지분을 희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입법적 관점의 검토 과제: 성과연동형 보수 활용에 이바지하는 제도 정비

- ① 회사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성과 달성 또는 장기근속 등 장래의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양도 제한 등의 조건'을 붙인 주식이나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정비(2024.6 상법개정안 발의), ② 성과연동형 보수 지급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예외 규정 마련 등 검토
 - 2024년 벤처기업법 개정에서는 RSU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성과조건부 주식교부계약 도입), 자기주식 특례 도입(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자본잠식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 취득)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 중견기업 인력 수급·관리 지원정책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정확한 인력 수급·관리 실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견기업의 특성과 의의 등을 토대로 규모 관점에 더해, 지역, 업종 등의 관점에서 지원요건 차등화 필요
- 중견기업의 인력 문제는 ‘수급’ 관점의 문제도 있지만, ‘관리’ 관점의 문제가 심각한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고용지원정책 수립 시 체계적 검토를 진행하는 것 필요

- 중견기업의 인력 수급·관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의 지원을 포함한 다각적 측면의 지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중견기업의 인력 수급·관리 문제는 일자리 만족도와 관계된 것이기도 한데, 중견기업의 일자리 만족도는 개인의 발전 가능성, 인사 체계(승진 제도), 일자리의 사회적 평판, 일의 자율성과 권한, 일과 적성, 흥미의 일치 등 여러 측면에서 낮은 상황
 - 예컨대, 일자리의 사회적 평판에 관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중견기업의 인력 수급·관리 문제 해소를 위해 중견기업의 위상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회적 이미지나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함을 시사

정책적 관점의 검토 과제: 인력 수급을 위한 정책

□ 지방 소재 중견기업의 인력 수급 지원 강화

- 지역 대학 또는 폴리텍과 연계한 취업 프로그램 운영이나 취업박람회 개최 등 지역별 채용의 장 확대, 수도권-비수도권 중견기업 취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차등 적용 등 지방 소재 중견기업 인력 수급 지원 강화
 -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중견기업의 중요성 실증분석」에 따르면 지방 중견기업의 성장 양질의 일자리 확충, 지역 경제 및 제조업 등 주요 산업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음
- 지방 이전 중견기업의 지원기준 등(상시 고용인원 기준 등)을 완화하는 등 지방 이전 중견기업의 인력 수급 배려
 - 2023년 11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는 산업현장의 자동화로 고용 수요가 감소한 것을 비롯해 중소기업과 국가철단전략 산업기업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의 신규 고용 최저기준을 완화(30명 → 20명)하였는데, 이를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 가능

정책적 관점의 검토 과제: 인력 수급을 위한 정책

□ 노동집약적 제조업 등 중견기업의 인력 수급 지원 강화

- 현행 중견기업법 제9조도 정부가 기술 현황 및 전망 등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업종별 중견기업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
 - 업종별 상이한 급여 체계나 근무 조건 등으로 인력이 어떤 부문으로 이동하는지를 파악한 후 특정 업종으로 인력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 특정 업종 중견기업의 인력 수급 문제 등을 고려한 취업박람회 등 고용알선 프로그램 상시 진행 등 검토 가능

□ 성장형 중견기업의 인력 수급 지원 강화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기대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기업을 염두에 둔 특별한 지원도 필요
- 재정상의 한계나 다른 기업군과의 관계 등을 생각하면 특별한 지원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과거 중견기업 정의 논의 과정에서 언급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 등의 요소를 구체화하고 그것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을 각별한 지원의 대상으로 삼는 방안 등 검토 가능

□ 외국인 근로자 고용·활용 유연화

- 2023년 9월부터 300인 이상 중견기업 중 비수도권 뿌리산업에 속하는 중견기업의 외국인 근로자(E-9) 고용을 허용하는 제도 정비를 단행하였고, 2024년 6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서 외국인 근로자 유치 확대 방안 공개
- 인구 위기 대응 전략의 하나로 ‘미래인재 유치를 위한 유학생 정착 필요’를 강조하고,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 유치 계획 발표
- * 유학생의 효율적 활용과 해외 현지법인에 근무하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활용방안 등 검토

□ 산학협력 강화를 통한 우수인력 확보 등

□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확대

- 근로자의 장기근속 관점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일정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중견기업은 2021년 10월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대상에서 제외되기 시작
- 지방 소재 중견기업 등을 적절히 육성하지 못하면 향후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하면 적어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에 지방 소재 중견기업 등을 포함하는 것 검토 필요

□ 내일채움공제 제도개선

- 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중견기업도 이용하는 게 가능하나(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이용 불가),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의 핵심 인력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중소기업에 전 주어 상당히 미흡
- 내일채움공제는 중견기업과 핵심 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 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 인력에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
- ① 중견기업 납입금은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하고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② 중견기업 핵심 인력이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되 청년의 경우 근로소득세 50%, 그 외의 경우 근로소득세 30% 상당을 감면

□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확대·개선

-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 시간 단축, 유연 근무, 육아휴직 등을 도입·활용하는 기업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공모형과 요건형이 있음
- 중견기업 대상 고용안정장려금은 ① 공모형이 많고 예산 등 제약이 있다는 것, 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처럼 우선지원대상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다는 것으로 중견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 등을 적절히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중견기업의 인력 수급·관리를 위한 대책 등을 파악한 후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유형을 확대하는 방안(주거비 등 지원 확대, 교육·훈련 등 기회·대상 확대, 기업 문화 개선 등 포함) 또는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가능



감사합니다

2 주제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에 관한 연구

- 사회** 김병연 교수 (건국대)
발표 구성권 교수 (명지전문대)
토론 황헌순 박사 (계명대)
김신언 세무사 (엔트세무법인)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에 관한 연구

구성권*

* 명지전문대학 세무회계과 교수(법학박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서론

- ▶ 현재의 기업구조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세분화해 볼 수 있으며, 이 중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 2022년 기준으로 중견기업 수는 5,576개로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하지만, 매출은 961.4조원으로 14.4%, 고용은 158.7만명으로 12.8%, 수출은 1,231억불로 18.0%를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음(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의 중견기업 현황).
- ▶ 하지만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이 많다 보니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기도 함.

서론

- ▶ 2022년 기준으로 중견기업 중 중소기업 회귀를 검토한 기업은 5.3%이며, 회귀를 검토한 주요 원인은 조세지원 축소(61.6%), 금융지원 축소(15.7%), 중소기업적합업종(12.5%), 공공조달시장 등 판로 제한(7.5%) 순으로 나타남. 또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희망하는 정책으로는 금융(31.8%), 조세(27.8%), 기술개발 지원(12.1%) 순이었음(산업통상자원부, 2023).
- ▶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의 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를 통해 볼 때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서론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이라 함) 제12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세 감면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은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음.
- ▶ 특히 2022년 기준 중견기업의 총 투자는 38.9조원으로 전년 대비 26.7%가 증가하여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이 중 설비투자는 29.5조원, 연구개발 투자는 9.4조원임.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는 9.42조원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하였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확대될 전망이다(2023년 9.43조원, 2024년 9.63조원으로 예상됨).
- ▶ 따라서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를 지속해서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지원의 한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조세 특례

1. 중견기업의 개념

(1) 중견기업법

- ▶ 중견기업법에서는 중견기업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중견기업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아닐 것
-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조세 특례

- ▶ 여기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것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조세 특례

(2) 중소기업과 비교

- ▶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가 아닐 것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조세 특례

- ▶ 여기서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함.

-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별표 1)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음.

주된 업종	규모 기준(평균매출액)
의류 제조, 1차금속 제조 등	1,500억원 이하
식료품 제조, 건설, 도소매 등	1,000억원 이하
운수창고, 정보통신 등	800억원 이하
보건사회복지, 기타개인서비스 등	600억원 이하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	4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조세 특례

2. 중견기업과 조세 특례

-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 제9조 제4항).

- 중소기업이 아닐 것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닐 것
- 소비성서비스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지 않을 것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법 시행령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중견기업은 5천억) 미만인 기업일 것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조세 특례

3.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와 관련된 세제지원

(1) 개요

- ▶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견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 및 투자와 관련된 세제지원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함.
- ▶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와 관련된 세제지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그리고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에서는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통합투자세액공제와는 별개로 특정 산업 분야의 제작(투자)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2027년 콘텐츠 수출 2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경제 성장엔진, 케이-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므로, 통합투자세액공제와는 별개로 검토하기로 함.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조세 특례

(2)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표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

구분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기업
		코스닥상장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	기본	25%	20%	30%	20%
	추가	최대 15%	최대 10%	최대 1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기본	30%		40%	30%
	추가	최대 10%		최대 10%	최대 10%
일반	초과 금액 기준	40%		50%	25%
	발생 금액 기준	8·10·15%		25%	최대 2%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조세 특례

(3) 통합투자세액공제

<표 2>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

구분	기본공제율			추가공제율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기업	
일반	5%	10%	1%	3%
신성장사업화시설	6%	12%	3%	3%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15%	25%	15%	4%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조세 특례

(4) 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세액공제

<표 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

구분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기업
기본공제율	10%	15%	5%
추가공제율	10%	15%	10%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와 관련된 현행 세제지원의 한계

1. 문제 제기

- ▶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와 관련하여서는 다수의 세제지원 제도가 존재함.
- ▶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설정한 중견기업에 대한 매출액 기준의 적절성과 세액공제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 편중되는 현상, 그리고 세액공제율의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없는 기업에 있어서는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 이하에서는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와 관련된 현행 세제지원의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와 관련된 현행 세제지원의 한계

2. 중견기업의 범위

-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의 개념은 중견기업법과 거의 일치하나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중견기업은 5천억) 미만인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 ▶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각종 지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세제 지원을 매출액에 따라 재차 축소하는 것은 성장 기피를 유발하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의 단절을 심화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됨(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24).
- ▶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와 관련된 현행 세제지원의 한계

3. 세제지원의 대상과 공제율

- ▶ 연구개발 및 투자 관련 세액공제의 대부분은 소수의 대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283개 기업이 6,009억원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으며, 이 중 수입금액 상위 1%인 104개 기업이 전체의 98%에 해당하는 5,869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의 경우 전체 세액공제는 2조 334억원이었고, 이 중 수입금액 상위 1% 기업이 받은 세액공제는 1조 211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함(국세신문, 2022.10.24).
- ▶ 2022년 기준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는 42조 2,161억원이며, 이 중 수입금액 상위 10% 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는 38조 5,152억원으로 하위 10% 기업이 지출한 4,066억원의 94.7배에 해당하며, 특히 상위 10% 기업 중에서도 상위 1%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는 33조 6,220억원으로 전체의 79.7%를 차지함(조세일보, 2024.6.27).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와 관련된 현행 세제지원의 한계

4.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

(1) 이월공제

- ▶ 연구개발 및 투자 관련 세액공제는 세액공제율의 상향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됨. 하지만 공제율 상향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의 특성상 결손이 발생한 경우와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 금액이 큰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특정 세액공제는 이월이 가능하지만 당장의 기업 현금 흐름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함.
-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함(「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와 관련된 현행 세제지원의 한계

(2) 최저한세

- ▶ 최저한세는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제도로써 과도한 조세감면을 방지하고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는 부담하도록 하는 것임.
- ▶ 현행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7%이며,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9%를 적용함. 즉, 중견기업이 된 이후 1~3년은 8%, 4~5년은 9%, 그리고 6년 이후에는 10~17%에 해당하는 일반기업의 최저한세율이 적용됨.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개선 방안

1. 세제지원 기준의 개선

(1) 매출액 기준

- ▶ 2024년 세법개정안(기획재정부에서 2024. 7. 25.에 발표한 자료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이하 동일함)에서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 규모 기준(매출액 상한)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5배)로 조정함.

<표 4> 중견기업 규모 기준

주된 업종	중소기업	중견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의류 제조, 1차금속 제조 등	1,500억원	4,500억원	7,500억원
식품 제조, 건설, 도소매 등	1,000억원	3,000억원	5,000억원
운수창고, 정보통신 등	800억원	2,400억원	4,000억원
보건사회복지, 기타개인서비스 등	600억원	1,800억원	3,000억원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	400억원	1,200억원	2,000억원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개선 방안

- ▶ 중견기업계 세제건의(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24)에서는 매출액 기준의 개선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세제지원 매출액 기준 폐지(1안) 또는 R&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폐지(2안)를 제시함.
- ▶ 중견기업 규모 기준(매출액 상한)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5배)로 조정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은 중견기업계 세제건의에서 제시한 매출액 기준의 폐지에는 미치지 못함.
- ▶ 다만, 2022년 기준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에 의하면,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전체 중견기업의 85.5%,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전체 중견기업의 92.4% 비중으로, 중견기업의 절대적인 수가 매출액 5천억원 미만에 속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2024년 세법개정안은 매출액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지는 못하더라도 업종 간 불균형의 문제는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어 보임.
- ▶ 따라서 향후에는 개정된 중소기업 기준 대비 배수의 적정성 및 기업 규모(매출액) 기준의 임계점에 해당되는 기업이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여 보다 많은 중견기업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개선 방안

(2) 중소기업 유예기간

- ▶ 중소기업 졸업 유예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3년간 유지하는 제도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 2024년 개정세법안은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진출을 유도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우수기업의 성장 가속화 및 밸류업을 지원하기 위해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은 7년으로 확대함.
- ▶ 이는 기업 성장에 따른 세부담 증가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는 방안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개선 방안

2. 세제지원 대상 및 공제율의 조정

(1) 대상

- ▶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을 확대하였는데, 먼저 연구 전담요건을 완화하여 인건비의 경우 기존에는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연구·인력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였으나, 주된 연구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에 투입한 연구인력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실제 투입시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함. 예를 들어, 연간 실제 투입시간 비율이 국가전략기술 90%, 일반 10%인 연구원의 경우 현행 규정은 인건비의 100%에 대해 일반 공제율을 적용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인건비의 90%는 국가전략기술 공제율을, 나머지 10%는 일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함.
- ▶ 다음으로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세액공제 대상 비용의 범위에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를 포함하는 등 적용 범위가 일반 분야와 동일하게 확대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별표6).
- ▶ 중견기업계 세제건의(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24)에서는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적용방식 개선으로서 공통 인건비도 재료비 등과 동일한 방식으로 안분할 것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이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됨.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개선 방안

(2) 공제율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 매출액 또는 자산 증가로 최초로 중소기업에 졸업(유예기간 종료)한 경우 3~5년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중간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점감구조를 도입함.
- ▶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에 대한 우대 공제율(기본 25%, 추가 최대 15%)은 폐지하였는데, 이는 이미 성장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종료하고 상대적으로 상장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상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임.
-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신성장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 공제율 최대 10%는 기존과 같이 유지함.
- ▶ 적용 기한은 현행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개선 방안

- ▶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정리해 보면 <표 5>와 같음.

<표 5>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

구분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기업
	기존	개정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30%	30·35%(주1)	40%	30%
신성장사업화시설	20% (코스닥상장 25%)	20·25%(주2)	30%	20%
일반	8·10·15%	8·15·20%(주3)	25%	최대 2%

(주1) 중소기업 졸업 후 1~3년 : 35%, 4년 이후 : 30%

(주2) 중소기업 졸업 후 1~3년 : 25%, 4년 이후 : 20%

(주3) 중소기업 졸업 후 1~3년 : 20%, 4~5년 : 15%, 6년 이후 : 8%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개선 방안

- ▶ 중견기업계 세제건의(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24)에서는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 상향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매출액을 5천억원에서 2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율은 현행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15%, 일반기업 2%를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13~20%, 일반기업 7%로 일반·중견기업 공제율 5%씩 상향하는 것임.
-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현행 중소기업 40~50%, 중견기업·일반기업 30~40%를 중소기업 40~50%, 중견기업 35~45%, 일반기업 30~40%로 중견기업 구간을 35~45%로 신설하는 것임.
-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는 중견기업 대상을 현행 매출 5천억 원 미만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 또는 매출 2조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건의함.
- ▶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중견기업계 세제건의가 일정 부분 반영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됨.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개선 방안

2) 통합투자세액공제

- ▶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하여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점감구조를 도입함.
- ▶ 추가 공제율은 기존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 4%)에서 일괄하여 10%로 상향함.
- ▶ 적용 기한은 현행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개선 방안

- ▶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기본공제율을 정리해 보면 <표 6>과 같음.

<표 6>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기본공제율

구분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기업
	기존	개정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15%	15·20%(주1)	25%	15%
신성장사업화시설	6%	6·9%(주2)	12%	3%
일반	5%	5·7.5%(주3)	10%	1%

(주1) 중소기업 졸업 후 1~3년 : 20%, 4년 이후 : 15%

(주2) 중소기업 졸업 후 1~3년 : 9%, 4년 이후 : 6%

(주3) 중소기업 졸업 후 1~3년 : 7.5%, 4년 이후 : 5%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개선 방안

- ▶ 중견기업계 세제건의(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24)에서는 일반은 현행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일반기업 1%에서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7%, 일반기업 3%로, 신성장·원천기술은 현행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6%, 일반기업 3%에서 중소기업 18%, 중견기업 10%, 일반기업 6%로, 국가전략기술은 현행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15%, 일반기업 15%에서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20%, 일반기업 15%로 제시함.
- ▶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중견기업계 세제건의 내용 중에서도 중견기업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부분이 반영되었는데,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됨.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개선 방안

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2023년 세법개정에서 영상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기본공제율의 상향 및 국내 제작비 비중이 높은 영상콘텐츠 등에 대한 추가공제율의 신설이 이루어짐.
- ▶ 일반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각각 종전 3%, 7%, 10%에서 5%, 10%, 15%로 상향하고, 국내 제작비 비중이 높은 영상콘텐츠 등은 각각 10%, 10%, 15%의 추가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 적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개선 방안

- ▶ 2023년에 개정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정리해 보면 <표 7>과 같음.

<표 7>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

구분	기존			개정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기업
기본공제율	7%	10%	3%	10%	15%	5%
추가공제율	-	-	-	10%	15%	10%

- ▶ 다만, 현행 추가공제율은 일반기업과 동일하여 중견기업에 특화된 공제율은 아님.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개선 방안

3.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 강화

(1) 제도의 활용도 향상

- ▶ '제도의 활용도 향상'과 관련된 이하의 내용은 발표자의 '연구개발 및 투자, 제작 관련 세액공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2024)의 내용 중 일부를 중견기업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임.
-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소개 및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215개 설문대상 기업 중 약 20%의 기업만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만약 해당 제도를 알았다면 이용했거나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90%로 나타남(한국개발연구원 2022, 135).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가 있으나, 사전심사 없이 국세청에 직접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이 대부분이므로 중견기업의 사전심사 제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을 위하여 해당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개선 방안

(2)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

- ▶ 중견기업이 최저한세로 인하여 연구개발 및 투자 관련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현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중견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제외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 이를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 감면에서 제10조와 제24조, 제25조의6 등의 세액공제를 삭제하는 것임.
- ▶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경우 제132조 제1항 제3호에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임.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개선 방안

- ▶ 다만, 해당 방안은 과도한 조세감면을 방지하고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는 부담하도록 하는 최저한세의 기본 취지와 상충되는 면이 있으므로, 가급적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되는 세액공제의 범위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핵심 산업 위주로 좁게 설정함으로써 최저한세의 기본 취지와 상충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 중견기업계 세제건의(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24)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최저한세를 폐지하거나 중견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전체 중견기업에 대해 8%를 적용하는 방안과 함께 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시함.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개선 방안

(3) 세액공제의 환급 및 양도 제도 도입

- ▶ '세액공제의 환급 및 양도 제도 도입'과 관련된 이하의 내용은 발표자의 '연구개발 및 투자, 제작 관련 세액공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2024)의 내용 중 일부를 중견기업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임.

1) 해당 제도의 취지

- ▶ 세액공제의 환급은 세액공제 금액이 산출세액보다 큰 경우 차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며, 세액공제의 양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주체(양도인)로부터 다른 납세 주체(양수인)에게 해당 혜택이 이전되는 것을 말함.
- ▶ 세액공제의 환급 및 양도 제도는 현행 우리나라의 조세법 체계와는 맞지 않는 제도임.
- ▶ 다만, 세액공제라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이를 통하여 정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임.
- ▶ 따라서 세액공제의 환급이나 양도 제도가 현행 조세법 체계와는 다소 이질적이라 하더라도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이나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정책 목적에 활용할 수 있다면 해당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개선 방안

2)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

① 미국의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은 미국의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을 개정하여 이차전지나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생산을 확대하고자 여러 가지 혜택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이하 'AMPC'라고 함)임.
- ▶ 요건 : 미국 내에서 생산하였을 것,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닐 것
- ▶ AMPC는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방정부로부터 직접 환급(elective pay)받거나 다른 납세자에게 양도(transfer)가 가능한 특징을 지니고 있음. 다만, 직접 환급과 양도는 에너지와 관련된 특정 세액공제에만 적용되고 있음.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개선 방안

[직접 환급]

- ▶ 직접 환급은 연방 소득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조직이나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임(26 USC §6417 (d)(1)(A)).
- ▶ 하지만 납세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후 Section 45X(c)(1)에 정의된 적격 부품을 생산하여 AMPC가 발생한 경우를 비롯하여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세액공제(에너지 세액공제(§48) 등 12가지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특별히 직접 환급이 가능함.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개선 방안

[양도]

- ▶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양도인)는 현금을 받고 특수관계가 없는 납세자(양수인)에게 해당 과세 연도에 발생한 적격 세액공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양도 대가는 현금이어야 함. 그리고 양도 대가는 양도인의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양수인은 이를 공제받을 수 없음(26 USC §6418 (b)(1)).
- ▶ 세액공제 대상 재산이 사용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양도가 가능함(26 USC §6418 (f)(1)(B)(ii)).
- ▶ 양수자에게 양도된 세액공제가 실제보다 과도한 경우에는 초과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양수자에게 부과됨(26 USC §6418 (g)(2)(A)). 다만, 양수자가 과잉 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추가적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음(26 USC §6418 (g)(2)(B)).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개선 방안

②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미국]

- ▶ 미국은 36개 주에서 영상 제작 등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데, 세액공제는 25개 주에서 운영하고 있음.
- ▶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는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제작 예산의 75% 이상을 소비하거나 주요 촬영일의 75% 이상을 촬영한 경우, 인건비와 영상 촬영을 위해 캘리포니아 내에서 사용한 서비스 또는 유형자산 구입 및 임차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독립영화의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의 양도가 가능함(이예지·황성필, 2023). 이밖에 조지아주에서는 세액공제의 양도가 가능하고, 뉴욕주에서는 세액공제의 환급이 가능함(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개선 방안

[영국]

- ▶ 영국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은 기본적으로 핵심 지출액의 80%와 영국 내 핵심 지출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하는 형태임. 특히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공제대상 금액(손실액을 한도로 함)의 25%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음 (이예지·황성필, 2023).

[프랑스]

- ▶ 영화 제작자 세액공제는 요건을 갖춘 지출액의 30%로 하며, 제작비 예산의 80%를 초과할 수 없고, 국제 공동 제작의 경우 프랑스 지분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원은영, 2023). 특히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보다 클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음(이예지·황성필, 2023).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개선 방안

3) 입법 방안

① 적용 범위와 기간

-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어 연구개발이나 투자와 관련된 기업의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그리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대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 대부분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에 일몰기한이 명시되어 있고 세액공제 환급 제도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운용을 통해 그 성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존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와 같이 기본적으로 3년 단위로 적용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임.
- ▶ 세액공제의 양도와 관련된 범위와 적용 기간 등은 기본적으로 세액공제의 환급 제도와 동일한 틀을 유지하면 될 것임.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개선 방안

② 재투자과 연계

- ▶ 세액공제의 환급이나 양도 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결국 핵심 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를 더 많이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세액공제의 환급이나 양도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재투자 등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③ 관리 방안

- ▶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환급 요건을 충족한 적격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납부된 세액(기납부세액)으로 취급하여 신고서에 반영하되, 일반적인 환급 절차와는 달리 일정 기간 내의 재투자를 전제로 환급하고, 만약 재투자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징수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임.

④ 입법안

-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가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해당하고, 제145조는 삭제된 조항이므로 법 체계적 위치상 제145조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결론

- ▶ 중견기업은 비록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숫자는 적지만 매출과 고용, 그리고 수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중견기업의 설비투자과 연구개발 투자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 ▶ 하지만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이 많다 보니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요 원인은 조세지원 축소로 파악됨.
- ▶ 이에 따라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희망하는 정책에서도 조세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행 세제지원의 한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봄.

결론

- ▶ 세제지원 기준의 개선과 관련하여 매출액 기준과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세법개정안을 통하여 일정 부분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중견기업의 절대적인 수가 매출액 3천억원(5천억원) 미만에 속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매출액 기준의 완전 폐지보다는, 개정된 중소기업 기준 대비 배수의 적정성 및 기업 규모(매출액) 기준의 임계점에 해당되는 기업이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여 보다 많은 중견기업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 ▶ 세제지원 대상 및 공제율의 조정도 세법개정안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 다만,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및 공제율의 상향 이외에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임. 구체적으로는 중견기업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소개 및 교육 강화 등 제도의 활용도 향상 방안, 핵심 산업과 관련된 일부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중견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의 적용 제외 방안, 중견기업을 위한 세액공제의 환급 및 양도 제도 도입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토론문]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에 관한 연구

황헌순(계명대 세무학과 조교수)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토론의 기회를 주신 권종호 회장님과 학회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훌륭한 발제를 해주신 구성권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발제문을 통해 최근 세제개정 내용 등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기준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에 의하면,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전체 중견기업의 85.5%,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전체 중견기업의 92.4%비중으로, 중견기업의 절대적인 수가 매출액 5천억원 미만에 속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2024년 세법개정안은 매출액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지는 못하더라도 업종 간 불균형의 문제는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 등을 볼 때, 중견기업에 대한 활성화와 관련한 세법개정에 대한 교수님의 평가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어 연구개발이나 투자와 관련된 기업의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그리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대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인의 입장에서 우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①통합투자세액공제, ②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③세액공제의 양도에 대해 교수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현재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특히 세액공제 양도와 같은 제도가 반영되는 경우, 이로 인한 우려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 교수님의 고견을 여쭙보고자 합니다.

또한, '세액공제의 환급이나 양도 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결국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핵심 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를 더 많이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세액공제의 환급이나 양도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재투자 등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투자는 세액공제의 환급 등이 발생한 동일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 해외제도 혹은 교수님의 고견이 있으시면 여쭙고자 합니다.

교수님의 훌륭한 발제에 어울리지 않는 부족한 토론을 하게 되어 송구합니다만, 부디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세무사 김신언

(법학박사, 美 ILLINOIS주 변호사)

목 차

I.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법리적 타당성

1. 국가성장에 대한 파급효과 측면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II. 향후 중견기업 조세특례 발전 방향

1. 연구개발 및 중견기업의 투자 관련
2. 기업승계 조세특례 관련 - 투자를 위한 기업의 향후 지속가능성

III. 결론

Ⅰ.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법리적 타당성

1. 국가성장에 대한 파급효과

가. 기술개발 측면

- ① 중소기업은 중견기업보다 투자여력에 적어 기술개발의 확장 범위가 제한적
- ② 중소기업이 세제감면을 받는 혜택에 비해 중견기업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커서 기술투자에 대한 유인이 클 수 밖에 없음
 - 중소기업,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지원이 해당 기업의 특허출원수, R&D 지출액, 매출액, 수출액 증대효과가 매우 크다는 실증분석 결과(이종호 외, 157)
- ③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필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1①)을 위한 최선의 지원이 필요
 - 중소기업은 생존 및 성장 측면에 초점, 중견기업은 국가경쟁력 측면에 우선순위 필요: 실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현저히 낮고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점(발표문) 고려

3

Ⅰ.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법리적 타당성

1. 국가성장에 대한 파급효과

나. 고용 및 산업발전 측면

- 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26) 등 세제 지원에서 차별
- ② 고용증대, 상용근로자 확대 유인 필요성면에서 중견기업의 "좋은 일자리" 확대가 국민 생활 측면에서 더 긍정적인 효과 발생: 세제 차별보다 혜택을 늘려야 하는 이유*
 - 우수 중견기업으로, 더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비정규직 비중을 높이거나 사내하청 등의 비정상적인 아웃소싱에 힘을 쏟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범주 내에 머무르거나 계열 및 공정분리를 통하여 여러 개의 중소기업으로 나누어지고 있어 지속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조준모외, 51).
 - 제조업인 중견기업의 평균 고용인원과 대졸초임 중소기업 평균보다 높으나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 준비 부족(이종호 외, 141) cf)산업부,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지원: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 수행기업 9개 신규 지정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10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에 맞춰 지방소멸 문제 연계 필요(노동집약적 산업의 고용승계와 지방에 기업 존치 가산점) ex)지역유통기업과 전통시장, 명물거리 등 지역과 한국특색을 대표하는 관광쇼핑명소
 - 경제부총리가 기획재정부장관 겸직이라는 측면에서 세제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부각할 필요가 있음

4

I.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법리적 타당성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가. 중견기업의 범위

- ① 업종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견기업을 적용함
→ 조특법도 이에 따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견기업으로 구분하되, 세제 감면종류에 따라 3천억원, 5천억원(연구개발) 기준 적용, 업종별 특성을 고려 중견기업 규모 기준(매출액 상한)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5배)로 조정
- ② 공공기관·지방공기업·금융기업은 중견기업에서 배제(「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① 나목)
→ 조특법 역시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법상 중견기업 요건에 규모 기준에서 제외(조특법 §7의4①, 동법 시행령 §6의4① 1의2, §9④ 1의2): 조세특례보다 중견기업법에서 먼저 배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세제로 확대될 우려 있음

나. 조세특례관련 구체적 기준 필요

- ① 중견기업법 §9(업종별 중견기업시책) ①항 정부는 기술현황 및 전망 등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견기업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의무규정으로 개정 필요, 시행령에 조세특례도 명시할 필요(성장사다리 단절심화요인이라면)
- ② 중견기업법 §12(조세감면에 관한 특례), §15(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 → 선언적 의미일 뿐 구체적으로 중견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법적 근거나 권한이 명시되지 않음

5

II. 향후 중견기업 조세특례 발전 방향

1. 연구개발 및 중견기업의 투자 관련

가. 중견기업의 구분 범위

- ① EU는 주기준(종사자), 보조기준(매출액, 총자산)으로 인적요소에 더 중점을 두고 있으나 우리는 외형적 기준에만 초점을 맞춤
- ② 중소기업 졸업유예(3년 유보) 기준에 인적요소(전문인력, 정규직 전환자 확대), 물적요소(최근 설비투자시 추가적으로 3년 유보)와 관련한 추가적 예외 규정 마련 필요 N
→ 연구인력개발(상시근로자) 확충, 시설투자 유인 확대(자금유동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유지해 줄 필요성이 인정됨)

나. 국내투자 개선 효과 등에 대한 평가 개선

- ① 반도체 등 대미 무역관련 대규모 해외 투자에 비해 중견기업은 국내투자 비율을 확대(기존 산업분야 확장 64.1%, 노후설비 개선 및 교체 32.1%)하고 있는 실정(함수미): 중견기업의 국내투자 확충방안으로 세제 지원 필요
→ 투자활성화를 위한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책: 투자·R&D 등 세제지원 강화(50.8%), 물가안정 및 내수시장 활성화(36.3%), 금리인상 속도조절(27.4%), 인력수급 해소(23.5%)
- ② 국내 투자는 기업자체의 경쟁력 확보 이외에 이와 관련한 국내 중소기업의 매출증대의 선순환 효과가 있음- 높은 경제 기여도 고려해야 함

6

II. 향후 중견기업 조세특례 발전 방향

2. 가업승계 조세특례 관련 - 투자를 위한 기업의 향후 지속가능성

가.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증여 및 상속 특례조건

- ① 인적 요소
 - ㉠ 수증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자로 취임 5년 유지 + 지분 감소하지 않아야 함
 - ㉡ 60세 이상 부모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이상 보유하였어야 함
- ② 물적 요소 : 아래 ㉠,㉡,㉢ 요건을 모두 충족
 -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상호출자제한 등 소유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 조특법상 독립성 기준 충족
 - ㉢증여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

나. 중견기업 특성에 따른 특례 요건이 반영되어야 함

- ① 수증자 대표이사이어야 함 → 중견기업 규모는 자녀보다는 전문경영인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후계자 창업의지가 기업존립, 승계의지는 기업성장과 발전에 영향(정대용 외,193), 경영자의 승계의지 <경영자와 후계자 신뢰관계 실증분석(김용기 외, 193)→ESG모델개선
- ② 가업의 승계에만 초점을 맞출 것인지 기업자체의 사회적 기능에 중점을 둘 것인지 관점 차이가 존재 → 상속세 부담 감소 및 해당 기업 유지 목적에 부합해야 함(독일 헌법재판소)
- ③ 자본주의에서 좋은 기업의 승계가 반드시 직접 수증자가 경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소매업, 서비스업, 여관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일본의 전통적인 가업의 승계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 필요 → 중견기업법 §22(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지원)
- ④ 중견기업법 §15(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으로 제한*

결론

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전에 중견기업법의 합리적 개편

- ① 자체적으로 중견기업의 범위 축소문제 해소
- ② 조세특례관련 중견기업법률에서 명시한 조문의 실효성 개선

2. 중견기업의 조세특례 발전 방향

- ① 중소기업에 비해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므로 세제지원에 있어 차별할 수 밖에 없는 근거에 대한 합리적 대응논리 개발
- ② 세제 감면 필요성 이외에 중견기업이 국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장점 등 다각적인 특혜의 효과 설득할 수 있어야 함
- ③ 중소기업의 졸업유예 기준에 인적요소 등 반영 → 매출액 기준 폐지 or 매출액 대비 배수의 세제지원 기준에서 확장하여 실제 고용지표 개선, 연구 및 국내 시설개발 투자 등이 입법에 반영(다양성, 지속성)

참고문헌

- 이종호 · 심재윤 · 임채린 · 정우진, "정부 R&D 지원이 중견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 비교를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 2021.
- 조준모 · 황성수, "중견기업 육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이끌어야", 「노동리뷰」 44호, 한국노동연구원, 2008
- 함수미, "중견기업 절반, "올해 국내 투자 유지, 확대할 계획": 중경련, '2024년 중견기업 투자 전망조사 결과' 발표, 「I-CONNECTED」, (주)첨단, 2024.
- 정연승, "유중산업에서 중견기업 정책과제 제언",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유통학회, 2022.
- 정대용 · 임진혁, "가족기업 후계자의 셀프리더십과 승계자기효능감이 승계의지와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경영교육연구」 제31권 제1호, 한국경영교육학회, 2016.
- 김대홍, "일본 경영승계원활화법의 사업승계 지원제도에 관하여-우리나라의 기업승계 지원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22권 제4호, 인하대학교?, 2019.
- 강련호,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출자전환, 무상감자와 기업승계 조세특례의 제문제", 「조세법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세법학회, 2019.
- 김용기 · 김영수, "중소기업 가족기업의 후계자 역량개발이 승계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승계의지와 신뢰관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제32권 제6호, 한국경영교육학회, 2017.
- 오윤환 · 김은아 · 박찬수, "혁신친화형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STEPI Insight」 259권, 2020.

3 주제

중견기업의 ESG 성과에서 정보공시와 재무적 요소의 관련성 연구

- 사회** 안성포 교수 (전남대)
발표 전덕영 위원 (서울신용보증재단)
토론 남궁주현 박사 (성균관대)
배승욱 대표 (벤처시장연구원)

중견기업의 ESG성과에서 정보공시와 재무적요소의 관련성 연구



2024년 11월 22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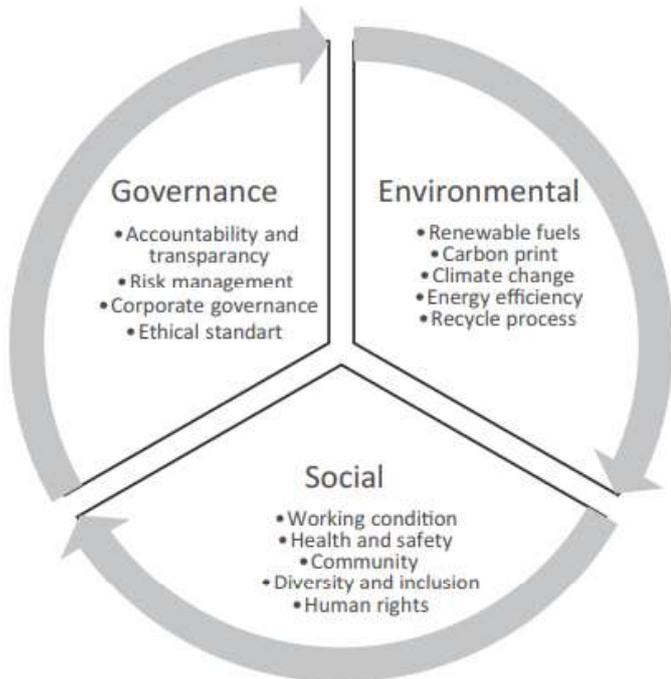
전덕영 책임전문위원(서울신용보증재단, 경영학박사)

목 차

I. 서론
II. 선행연구
III. 연구방법 및 모형
IV. 실증분석
V. 결론

연구자	ESG와 금융, 기업성과와의 관련성
Buchetti & Arduino 2022	세계 국가들은 정책적으로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성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기업이 지속가능하고, 이해관계자 지향적인 행동을 구현하여 발전하기를 장려하고 있다.
유정민 · 양동훈 (2022)	특히 정책입안자들은 ESG에 대한 다양한 지침과 규정을 제정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지침과 규정은 기업에게 ESG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의 ESG경영은 재무적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의 관계를 개선하는 경영활동이며, 지속가능한 경영과 장기적인 기업가치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Elena & Renate(2022)	금융분야에서 기업과 투자자는 ESG에 중점을 두고 있고, 자본시장은 ESG변화를 창출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기업은 금융에 대한 접근을 제한받으므로 ESG성과를 개선하도록 자극을 받게 된다. ESG성과가 우수한 기업과 보상받는 경영자는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을 강화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족기업과 이해관계자는 ESG에 대한 기업성과를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는 표준과 지표를 보유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Environmental
환경 : 재생연료, 탄소배출, 기후변화, 에너지 효율, 재활용과정에 대한 것.
Social
사회 : 근로조건, 보건안전, 공동체, 다양성과 포용성, 인권에 대한 것.
Corporate Governance
지배구조 : 책임감과 투명성, 위기관리, 기업 지배구조, 윤리 기준에 대한 것.

자료: Sustainalytics(2022)를 토대로 Nareswari et al.(2022)이 작성한 ESG 원칙의 틀

[Figure 1] ESG 원칙의 틀

환경 모범규준 체계	사회 모범규준 체계	지배구조 모범규준 체계
I. 리더십과 거버넌스	I. 리더십과 거버넌스	I. 이사회와 리더십
1. 환경경영 리더십	1. 리더십	1. 이사회와 역할과 책임
2. 환경경영 전략 및 목표	2. 전략 및 방침	2. 이사의 역할과 책임
3. 환경경영 거버넌스	3. 조직의 의사결정	3. 이사회 구성
II. 비재무 위험 관리	4. 기업문화	4. 사외이사
1. 환경과 기회의 식별, 평가 및 관리	II. 비재무 위험 관리	5. 이사회 운영
2. 기후변화 위험 및 관리	1. 비재무 위험의 통합적 관리	6. 이사회 내 위원회
3. 위험관리체계	2. 비재무 위험과 기회의 인식	II. 주주보호
III. 운영 및 성과	3. 비재무 위험 대응	1. 주주의 권리
1. (설계)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III. 운영 및 성과	2. 주주총회
2. (조달/구매/유통) 친환경 공급망	1. 인권	III. 감사
3. (생산) 친환경 사업장	2. 노동 관행	1. 내부 감사
4. 성과 관리	3. 공정운영 관행	2. 외부 감사
5. 환경회계	4. 지속가능한 소비	IV. 이해관계자소통
6. 생태계 보전	5. 정보보호	1.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직접 소통
IV. 이해관계자 소통	6.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2. 정보공개
1. 이해관계자 설정	IV. 이해관계자 소통	
2. 이해관계자 대응 활동	1. 이해관계자 참여	
3. 환경정보공개	2. 정보공개	

자료: 한국ESG기준원 사이트(www.cgs.or.kr), 2024. 1. 7.

평가등급	내용
S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매우 충실히 갖추고 있으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매우 적음
A+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충실히 갖추고 있으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상당히 적음
A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적절히 갖추고 있으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적음
B+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다소 필요하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다소 있음
B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다소 필요하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있음
C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큼
D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거의 갖추지 못하여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됨

(초 록)

본 연구는 중견기업의 ESG성과에 대한 정보공시와 재무적 요소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기간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평균매출액 1,500억 원이 초과되고, ESG성과가 있는 중견기업 287개, 855개의 표본 수로 회귀 분석하였다.

첫째, 중견기업의 정보공시와 재무적 요소인 매출액, 주식가격, 상장주식수, 외국인지분율, 시가총액은 ESG성과에 체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이 나타났다. 이는 매출액이 높고, 주식가격이 높고, 상장주식수가 많고, 외국인지분율이 높고, 시가총액이 높으면 ESG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중견기업의 정보공시와 재무적 요소인 매출액*대주주지분율의 상호작용효과에서 ESG성과가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났다. 이는 매출액이 높고, 대주주지분율이 높은 기업이 상호작용할수록 ESG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은 주식가격, ROE, 시가총액이 ESG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고, 전체산업, Non-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은 주식가격, 상장주식수, 외국인지분율, 대주주지분율, 시가총액이 ESG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중견기업의 정보공시와 재무적 요소가 ESG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ESG평가등급이 높으면 기업의 경쟁우위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므로 중견기업은 내부적으로 ESG시스템의 구축과 ESG경영을 실행하고, 외부적으로 ESG 정보공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야 한다.

금융기관과 투자기관에서 ESG평가등급이 높은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중견기업은 ESG경영과 ESG평가를 통해 기업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중견기업이 ESG성과가 향상되도록 통합적으로 정책지원을 해야 한다.

1. 서 론

연구목적과 방법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중견기업의 ESG성과에서 정보공시와 재무적요소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것이다.

2020~2022년(3년기간)

중견기업 287개.
전체 855개의 표본수로 상관분석, 회귀분석하였다.

핵심주제어: 중견기업, ESG성과, 정보공시, 재무적 요소,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

I. 서론

본 연구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	본 연구
연구 대상	Ademi & Klungseth(2022), Maaloul et al.(2023), Sciarelli et al.(2023)은 미국의 S&P500 상장기업을, 김영환 외(2022), 황성준 외(2022), 김용기 외(2023)는 국내의 유가증권 상장기업,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 연구.	중견기업 (유가증권 상장기업)이 연구 대상임.
종속 변수	Alareeni & Hamdan(2020), Mohammad & Wasiuzzaman(2021), 김윤경(2020), 김영환 외(2022), 전진규(2022), 전덕영(2023)은 Tobin's Q, ROA, 매출액성장률의 재무성과를 종속변수로 사용.	중견기업의 비재무적요소인 E, S, G, ESG성과를 종속변수로 사용. ESG성과는 중견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부합하는 비재무적성과 를 보여주는 종속변수임.
자료 조사	Maaloul et al.(2023)은 Bloomberg, Sustainalytics의 자료를, 김윤경(2020)은 Bloomberg, KIS-Value의 자료를 사용	한국거래소 ESG포털, 금융감독원 DART, 에프앤가이드, 네이버증권의 중견기업의 실질자료로 분석.
연구 기간	Alareeni & Hamdan(2020)의 10년(2009~2018년), 김영환 외(2022)의 7년(2013~2019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기간 855개의 최근 데이터 표본 수 사용.
분석 방법	Madison & Schiehl(2021), Maaloul et al.(2023)은 상관분석, 구조방정식으로 분석.	차이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매출액*대주주지분율의 상호작용효과,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 등으로 ESG성과를 세밀하게 분석.

II. 선행연구

자원기반이론

연구자	자원기반이론(Resource Based Theory)
Behl et al., 2021; Ademi & Klungseth, 2022	ESG투자의 경제적 실행 가능성을 개념화한다. 자원기반이론에서 ESG투자는 기업의 자원과 능력을 증가시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ESG와 관련한 위험 요소를 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재무성과와 시장가치를 향상시킨다.
전덕영(2023)	유가증권시장 가족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특성이 주당순자산(BPS), 주당순이익(EPS)의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총자산, 서울지역, 제조업 업종이 주당순자산, 주당순이익에 양(+)의 값이 있어 총자산 등의 기업 자원이 재무성과와 시장가치에도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Porter et al., 2019; Mohammad & Wasiuzzaman, 2021	ESG는 회계자료의 재무성과에 없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무성과의 범위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의 재무보고서는 기업의 평판, 품질, 브랜드 자산 및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광범위한 정보공시를 포함하며, ESG에 대한 정보공시는 경영 목적과 이해관계인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즉 기업이 환경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ESG에 대한 정보공시가 기업의 경쟁 우위와 관련이 있다.

II. 선행연구

중견기업의 정보공시와 재무적요소의 ESG성과

연구자	중견기업의 정보공시와 재무적요소의 ESG성과
Alareeni & Hamdan(2020)	미국의 S&P500 상장기업의 Bloomberg의 자료로 ESG공시와 기업성적을 분석한 결과 ESG의 E, S 공시요인은 Tobin' s Q의 성과에 긍정적이며, G 공시요인은 Tobin' s Q, ROA에 긍정적이었다. E, S, G, ESG는 자산이 많고,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높았고, E, S, G, ESG의 공시 수준이 높을수록 ROA, ROE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Ademi & Klungseth(2022)	기업의 ESG등급이 재무성과와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ESG등급이 ROCE, Tobin's Q의 재무성과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이는 ESG측면이 기업에 대한 시장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정보를 구성하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가 기업성과에 긍정적이하고 하였다.
Madison & Schiehl(2021)	재무적 중요성이 ESG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재무적 중요성이 적용될 때 ESG성과가 크게 변함. 재무적 중요성이 ESG점수와 가치에 영향을 미치므로 ESG정보공시에서 높은 점수의 기업이 더 나은 투자 기회를 얻음. 재무적 중요성은 ESG성과에 기반한 투자결정에서 더 나은 투자기회를 얻는다.
Porter et al.(2019)	기업이 환경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ESG에 대한 정보공시가 기업의 경쟁 우위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II. 선행연구

중견기업의 정보공시와 재무적요소의 ESG성과

연구자	중견기업의 정보공시와 재무적요소의 ESG성과
Mohammad & Wasiuzzaman(2021)	말레이시아의 상장기업을 대상, 3,966개 표본으로 ESG공시가 Tobin' s Q의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말레이시아에서 ESG공시가 한 단위 증가하면 기업성과가 약 4%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ESG점수가 높은 경쟁 우위와 관련됨을 의미한다.
Sciarelli et al.(2023)	미국 S&P500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32개의 표본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ESG평가가 베타, 변동성의 위험노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SG 전체성과, 환경성과, 사회성과가 높을수록 기업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ifulco et al.(2023)	유럽상장기업 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COVID-19 이전과 COVID-19 기간으로 분류하여 COVID-19가 ESG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ESG점수는 STOXX 600지수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COVID-19 기간에도 기업들은 ESG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기업들은 COVID-19의 불안정한 시기에도 ESG 측면에서 모범 사례를 지속적으로 따르고 있었다.
전덕영(2024)	유가증권시장 가족기업들은 COVID-19의 위기상황의 기간에도 ESG경영을 실행하여 ESG성과가 우수하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보여주었다.

II. 선행연구

국내외 선행연구의 요약

연구자	연구국가	연구기업	연구기간	표본수	조사자료	분석방법	ESG
Ademi & Klungseth(2022)	미국	S&P500	2017-2020	5,750	MSCI, Yahoo Finance Report	회귀	독립
Alareeni & Hamdan(2020)	미국	S&P500	2009-2018	4,869	Bloomberg	회귀	독립
Bifulco et al.(2023)	유럽	STOXX600	2018-2021	600	Refinitiv Eikon	회귀	종속
Karoui & Nguyen(2022)	미국	NYSE, NASDAQ	1991-2019	16,615	CRSP Stock	회귀	독립
Maaloul et al.(2023)	미국	S&P500	2013-2016	900	Bloomberg, Sustainalytics	구조방정식	독립
Madison & Schiehl(2021)	미국	미국기업	2018	1,858	MSCI, SASB	상관	종속
Mhammad&Waizzara(2021)	말레이시아	Malaysia 상장기업	2012-2017	3,966	Bloomberg, Sustainalytics	회귀	독립
김영환 외(2022)	대한민국	KOSPI	2013-2019	4,031	KCGS, Kis-Value	회귀	독립
김윤경(2020)	대한민국	KOSPI	2011-2017	535	Bloomberg, KIS-Value	회귀	독립
이정환 외(2022)	대한민국	재벌기업집단	2013-2020	3,573	Sustainvest, Fn-Guide	회귀	독립
전진규(2022)	대한민국	KOSPI, KOSDAQ	2011-2020	6,479	KCGS, Fn-Guide	OLS	독립
최금화(2023)	대한민국	KOSDAQ	2012-2022	1,319	KCGS, Kis-Value	OLS	독립
본 연구	대한민국	중견기업	2020-2023	885	KCGS, Fn-Guide, DART, 네이버금융	회귀	종속

II. 선행연구

국내외 선행연구의 변수 요약

연구자	ESG	성과	매출액	주식가격	상장주식수	외국인지분율	대주주지분율	ROE	부채비율	영업이익률	시가총액	업종
Ademi & Klungseth(2022)	독립	TQ, ROCE			○		○		○			
Alareeni & Hamdan(2020)	독립	TQ, ROA, ROE							○			
Bifulco et al.(2023)	종속	-						○	○			○
Karoui & Nguyen(2022)	독립	주가수익률	○						○			
Maaloul et al.(2023)	독립	부채비용							○			
Madison & Schiehl(2021)	종속	-						○			○	
Mhammad&Waizzara(2021)	독립	TQ							○			○
김영환 외(2022)	독립	TQ, CAR				○	○		○			
김윤경(2020)	독립	TQ, ROA					○		○		○	
이정환 외(2022)	독립	변동성							○			
전진규(2022)	독립	TQ, 매출액성장률				○			○			○
최금화(2023)	독립	기업위험	○						○		○	○
본 연구	종속	-	○	○	○	○	○	○	○	○	○	○
합계			3	1	2	3	4	3	12	1	4	5

III. 연구방법 및 모형

연구모형

독립변수

조절변수

종속변수

정보공시와 재무적요소

매출액

주식가격

상장주식수

외국인지분율

대주주지분율

자기자본이익률

부채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시가총액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



ESG 성과

E(환경성과)

S(사회성과)

G(지배구조성과)

ESG성과

매출액*대주주지분율

III. 연구방법 및 모형

중견기업의 정의

구분	중견기업의 정의
중견기업법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약칭: 중견기업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아니면서,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2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거나 주된 업종에 상관없이(금융 및 보험업 제외)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면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에 해당 된다(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24).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에 따라 400억 원 초과, 600억 원 초과, 800억 원 초과, 1,000억 원 초과, 1,500억 원 초과가 있다.
본 연구	ESG성과가 있는 유가증권 상장기업 중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기간 평균매출액 1,500억 원이 초과되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모형

모집단 및 표본구성

자료수집 및 표본추출	
자료수집	한국거래소ESG포털, 금융감독원 DART, 에프앤가이드, 네이버증권의 공시자료에서 실증분석 변수 확보
표본추출	유가증권시장에서 3년 기간 ESG성과가 있는 기업은 773개 기업, 2,292개의 표본 수이다. 이 중에서 ① 3개년 평균매출액 1,500억 원 이하 기업, ② 공공기관, 공기업, 비영리법인, 외국법인과 금융, 보험, 건설 업종, ③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④ 결측치가 있는 기업에 대한 1,437개 표본 수는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87개 기업, 855개의 표본 수를 확정하였다.

등급	모집단 기업수(개)			중견기업 표본기업 수(개)		
	2020년	2021년	2022년	2020년	2021년	2022년
S	0	0	0	0	0	0
A+	14	12	5	0	0	0
A	88	170	117	9	28	12
B+	133	135	124	43	46	31
B	258	209	76	112	112	25
C	239	225	194	110	97	105
D	24	12	257	9	2	114
계	756	763	773	283	285	287
합계	2,292			855		

자료: 한국거래소 ESG포털(<https://esg.krx.co.kr>), ESG 통합등급 현황(KCGS), 2023.7.10.

III. 연구방법 및 모형

표본기업의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비율(%)	변수	구분	빈도	비율(%)
매출액	5,000억원초과	389	45.5	자기자본 이익률	5% 초과	471	55.1
	5,000억원이하	466	54.5		5% 이하	384	44.9
주식 가격	1,200원 초과	427	49.9	부채비율	100% 초과	396	46.3
	1,200원 이하	428	50.1		100% 이하	459	53.7
상장 주식수	400만주초과	414	48.4	매출액 영업이익률	5% 초과	359	42.0
	400만주이하	441	51.6		5% 이하	496	58.0
외국인 지분율	4% 초과	425	49.7	시가총액	2000억원초과	438	51.2
	4% 이하	430	50.3		2000억원이하	417	48.8
대주주 지분율	50% 초과	356	41.6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	여	323	37.8
	50% 이하	499	58.4		부	532	62.2

III. 연구방법 및 모형

회귀분석 모형

1. 유가증권시장 중견기업의 정보공시와 재무적 요소가 ESG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가설 1)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은 식 (1), 식 (2)와 같다.

$$ESG_A = \alpha_0 + \beta_1SALD + \beta_2STP + \beta_3NOS + \beta_4FOR + \beta_5OWN + \beta_6ROE + \beta_7LEV + \beta_8SOP + \beta_9ENV + \epsilon_i \dots \dots \dots \text{식 (1)}$$

$$ESG_B = \alpha_0 + \beta_1SALD + \beta_2STP + \beta_3NOS + \beta_4FOR + \beta_5OWN + \beta_6SALD * OWN + \beta_7ROE + \beta_8LEV + \beta_9SOP + \beta_{10}ENV + \epsilon_i \dots \dots \dots \text{식 (2)}$$

2. 전체업종,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과 Non-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으로 분류한 유가증권시장 중견기업의 정보공시와 재무적 요소의 ESG성과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가설 2)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은 식 (3), 식 (4), 식 (5)과 같다.

$$ESG_C = \alpha_0 + \beta_1FIND + \beta_2STP + \beta_3NOS + \beta_4FOR + \beta_5OWN + \beta_6ROE + \beta_7LEV + \beta_8SOP + \beta_9ENV + \epsilon_i \dots \dots \dots \text{식 (3)}$$

$$ESG_D = \alpha_0 + \beta_1STP + \beta_2NOS + \beta_3FOR + \beta_4OWN + \beta_5ROE + \beta_6LEV + \beta_7SOP + \beta_8ENV + \epsilon_i \dots \dots \dots \text{식 (4)}$$

$$ESG_E = \alpha_0 + \beta_1STP + \beta_2NOS + \beta_3FOR + \beta_4OWN + \beta_5ROE + \beta_6LEV + \beta_7SOP + \beta_8ENV + \epsilon_i \dots \dots \dots \text{식 (5)}$$

III. 연구방법 및 모형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 정의	측정
종속 변수	E	환경성과(A, B+, B, C, D등급)(2023년)	등급, 5~1점
	S	사회성과(A, B+, B, C, D등급)(2023년)	등급, 5~1점
	G	지배구조성과(A, B+, B, C, D등급)(2023년)	등급, 5~1점
	ESG	종합성과(A, B+, B, C, D등급)(2023년)	등급, 5~1점
독립 변수	SALD	매출액(5,000억 원 초과: 1, 이하: 0)(2020~2022년)	더미변수
	STP	주식가격((52주최고+52주최저)/2)/액면가/5,000원(2023.4.30.)	실수(實數), log
	NOS	상장주식수(상장주식수/액면가/5,000원)	실수(實數), log
	FOR	외국인지분율(외국인 주식지분율)	비율, %
	OWN	대주주지분율(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지분율)	비율, %
	ROE	자기자본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2020~2022년)	비율, %
	LEV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2020~2022년)	비율, %
	SOP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2020~2022년)	비율, %
	ENV	시가총액(상장주식수*주식가격)(2023.4.30.)	실수(實數), log
	FIND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산업분류 C25~33, J58~63, M72: 1, 그 외: 0)	더미변수

IV. 실증분석

기술통계량

변수	정의	단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E	환경성과	등급	1.80	1.03	1.00	5.00
S	사회성과	등급	2.46	1.44	1.00	6.00
G	지배구조성과	등급	2.26	1.18	1.00	5.00
ESG	종합성과	등급	2.03	1.14	1.00	5.00
SALD	매출액	더미	0.47	0.50	0	1
STP	주식가격	원	17,320	57,188	62	498,750
NOS	상장주식수	천주	6,501	9,315	200	97,475
FOR	외국인지분율	%	7.46	10.08	0.02	76.73
OWN	대주주지분율	%	45.33	14.89	9.56	91.71
ROE	자기자본이익률	%	4.00	12.65	-94.09	59.01
LEV	부채비율	%	129.83	150.74	4.76	1,141.41
SOP	매출액영업이익률	%	4.90	5.77	-17.12	30.94
ENV	시가총액	억원	4,483	8,129	126	103,383
FIND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	더미	0.38	0.485	0	1
N	855					

주) 주식가격, 상장주식수, 시가총액은 log를 실수로 변환.

IV. 실증분석

상관분석

구분	ESG	SALD	STP	NOS	FOR	OWN	ROE	LEV	SOP	ENV	FIND	VIF
ESG	1											
SALD	.363***	1										1.420
STP	.309***	.244***	1									1.469
NOS	.169***	.302***	-.020	1								1.239
FOR	.199***	.180***	.309***	-.040	1							1.224
OWN	.053	.066*	.052	-.133***	-.099***	1						1.089
ROE	.125***	.115***	.274***	.193***	.122***	-.121***	1					2.042
LEV	-.091***	.040	-.282***	-.184***	-.145***	.210***	-.419***	1				1.428
SOP	.161***	.051	.296***	.242***	.058*	-.138***	.666***	-.300***	1			2.052
ENV	.399***	.439***	.465***	.299***	.029	.180***	.320***	-.234***	.403***	1		1.821
FIND	-.008	-.021	-.216***	.082**	-.145***	.004	-.039	.225***	-.033	-.014	1	1.152

주 1) ESG: (종합성과)(등급), SALD: 매출액(더미변수)(5,000억 원 초과: 1, 이하: 0), STP: 주식가격(액면가 5,000원 기준)(log), NOS: 상장주식수(액면가 5,000원 기준)(log), FOR: 외국인지분율(외국인 주식지분율)(%), OWN: 대주주지분율(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지분율)(%), ROE: 자기자본이익률(자기자본 대비 당기순이익)(%), LEV: 부채비율(총자산 대비 총부채)(%), SOP: 매출액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ENV: 시가총액(log), FIND: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더미변수)(4차 산업 혁명 관련업종: 1, Non-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 0).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IV. 실증분석

중견기업의 정보공시와 재무적 요소가 ESG성과에 미치는 영향

구분	E	S	G	ESG_A
상수	-8.101*** (-8.282)	-9.456*** (-7.006)	-2.867** (-2.230)	-6.222*** (-5.427)
SALD	.404*** (5.772)	.925*** (9.583)	.241*** (2.616)	.466*** (5.676)
STP	.216*** (5.312)	.256*** (4.564)	.080 (1.500)	.187*** (3.927)
NOS	.431*** (5.638)	.501*** (4.749)	.009 (.090)	.235*** (2.618)
FOR	.004 (1.306)	.003 (.721)	.007* (1.645)	.007* (1.914)
OWN	.001 (.389)	.005 (1.617)	-.001 (-.401)	.003 (1.446)
ROE	.003 (.793)	.001 (.198)	-.006 (-1.348)	-.005 (-1.169)
LEV	.000 (.871)	7.872E-5 (.251)	.000 (-1.403)	.000 (-5.48)
SOP	.005 (.647)	-.013 (-1.324)	.022** (2.281)	.010 (1.180)
ENV	.532*** (6.176)	.631*** (5.308)	.410*** (3.625)	.498*** (4.932)
R ²	.317	.335	.104	.230
Adj R ²	.310	.327	.094	.222
F	43.610***	47.197***	10.867***	28.119***
표본 수	855	855	855	855
회귀분석모형				식 (1)

- ① 중견기업의 정보공시와 재무적 요소인 매출액, 시가총액은 E, S, G, ESG_A성과에 체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이 있었다. 이는 매출액이 높고, 시가총액이 높은 중견기업이 E, S, G, ESG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 ② 중견기업의 정보공시와 재무적 요소인 주가, 상장주식수는 E, S, ESG_A성과에 체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이 있었다. 이는 주가가 높고, 상장주식수가 많은 중견기업이 E, S, ESG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 ③ 중견기업의 정보공시와 재무적 요소인 외국인지분율은 G, ESG_A성과에 체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이 있었다. 이는 외국인지분율이 높은 중견기업이 지배구조, ESG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IV. 실증분석

ESG성과에 대한 매출액*대주주지분율의 상호작용효과

구분	E	S	G	ESG_A	ESG_B
상수	-8.101*** (-8.282)	-9.456*** (-7.006)	-2.867** (-2.230)	-6.222*** (-5.427)	-6.505*** (-5.643)
SALD	.404*** (5.772)	.925*** (9.583)	.241*** (2.616)	.466*** (5.676)	.909*** (3.928)
STP	.216*** (5.312)	.256*** (4.564)	.080 (1.500)	.187*** (3.927)	.175*** (3.642)
NOS	.431*** (5.638)	.501*** (4.749)	.009 (.090)	.235*** (2.618)	.238*** (2.661)
FOR	.004 (1.306)	.003 (.721)	.007* (1.645)	.007* (1.914)	.007* (1.890)
OWN	.001 (.389)	.005 (1.617)	-.001 (-.401)	.003 (1.446)	.008** (2.446)
SALD*OWN	-	-	-	-	-.010** (-2.048)
ROE	.003 (.793)	.001 (.198)	-.006 (-1.348)	-.005 (-1.169)	-.005 (-1.304)
LEV	.000 (.871)	7.872E-5 (.251)	.000 (-1.403)	.000 (-5.48)	.000 (-5.27)
SOP	.005 (.647)	-.013 (-1.324)	.022** (2.281)	.010 (1.180)	.010 (1.184)
ENV	.532*** (6.176)	.631*** (5.308)	.410*** (3.625)	.498*** (4.932)	.507*** (5.030)
R ²	.317	.335	.104	.230	.234
Adj R ²	.310	.327	.094	.222	.225
F	43.610***	47.197***	10.867***	28.119***	25.822***
표본 수	855	855	855	855	855
회귀분석모형				식 (1)	식 (2)

- ① 매출액 5,000억 원 초과이면 1, 이하이면 0인 매출액 더미변수(SALD)를 사용하여 매출액과 대주주지분율(SALD*OWN)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ESG_B 성과에서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났다. 이는 매출액이 높고, 대주주지분율이 높은 기업이 상호작용할수록 ESG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매출액과 대주주지분율이 높은 기업이 상호작용할수록 ESG평가등급의 비재무적요소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IV. 실증분석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과 Non-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의 ESG성과

구분	ESG_C	ESG_D	ESG_E
	(전체업종)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	(Non-4차산업혁명 관련업종)
상수	-9.190*** (-8.846)	-9.372*** (-5.954)	-8.643*** (-6.148)
FIND	.079 (1.023)	-	-
STP	.224*** (4.497)	.225** (2.173)	.223*** (3.819)
NOS	.009** (2.326)	.189 (1.225)	.433*** (3.914)
FOR	.005** (2.187)	-.000 (-.017)	.014*** (2.941)
OWN	.357*** (4.007)	.002 (.377)	.008** (2.562)
ROE	-.002 (-.532)	.012* (1.726)	-.009* (-1.859)
LEV	2.669E-5 (.097)	-4.164E-5 (-.112)	.001 (1.292)
SOP	.003 (.322)	-.013 (-1.043)	.015 (1.244)
ENV	.686*** (7.078)	.830*** (5.660)	.574*** (4.394)
R ²	.202	.250	.199
Adj R ²	.194	.231	.187
F	23.784***	12.949***	16.155***
표본수	855	323	532
회귀분석모형	식 (3)	식 (4)	식 (5)

- ① 전체업종에서 주식가격, 상장주식수, 외국인 지분율, 대주주 지분율, 시가총액은 ESG_C성과에 유의한 양(+)의 값이 있었다.
- ②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에서 주식가격, ROE, 시가총액이 ESG_D성과에 유의한 양(+)의 값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③ Non-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에서 주식가격, 상장주식수, 외국인지분율, 대주주지분율, 시가총액이 성과와 동일하게 ESG_E성과에 유의한 양(+)의 값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실증분석

연구결과의 비교분석

	전체업종	전체업종	전체업종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	Non-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
	ESG_A	ESG_B	ESG_C	ESG_D	ESG_E
SALD	+	+			
STP	+	+	+	+	+
NOS	+	+	+	+	+
FOR	+	+	+	-	+
OWN	+	+	+	+	+
SALD*OWN		-			
ROE	-	-	-	+	-
LEV	+	+	+	-	+
SOP	+	+	+	-	+
ENV	+	+	+	+	+
FIND			+		
회귀모형	식 (1)	식 (2)	식 (3)	식 (4)	식 (5)

IV. 실증분석

학문적 시사점

학문적 시사점(본 연구)	
1	주식가격, 시가총액은 모두 일관성있게 ESG_A, ESG_B, ESG_C, ESG_D, ESG_E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이는 주식가격, 시가총액의 기업가치가 높은 기업이 비재무성과인 ESG성과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쟁 우위가 낮은 기업에서 ESG 정보공시를 늘리고, 비재무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Mohammad & Wasiuzzaman, 2021).
2	매출액과 대주주지분율의 상호작용할수록 ESG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이는 매출액이 높고, 대주주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상호작용효과가 비재무성과인 ESG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3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에서 주식가격, ROE, 시가총액이 ESG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전체업종, Non-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에서 주식가격, 외국인지분율, 대주주지분율, 상장주식수, 시가총액이 ESG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따라서 전체업종, Non-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에서 상장주식수, 외국인지분율, 대주주지분율이 ESG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나,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에서는 상장주식수, 외국인지분율, 대주주지분율이 ESG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주식 수와 주식 지분율이 ESG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IV. 실증분석

실무적 시사점

구분	실무적 시사점(중견기업의 관점)
1	글로벌 기업환경에서 ESG성과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중견기업은 글로벌 환경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생존하기 위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ESG성과를 잘 관리해야 한다.
2	기업의 ESG 정보공시와 같은 지속가능한 활동은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와 성과를 높인다(Porter et al., 2019).
3	최근에는 금융에서 투자결정을 위해 비재무정보를 사용하여 ESG 요소를 더 많이 고려한다. 중견기업은 재무적 중요성을 사용하면서 자본시장의 정보를 잘 충족하도록 효과적으로 ESG 정보공시를 준비해야 한다(Madison & Schiehl, 2021).
4	ESG평가등급이 높다는 것은 기업의 경쟁우위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준다.
5	중견기업은 ESG경영과 ESG평가에 대비한 기업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6	중견기업은 내부적으로 ESG시스템의 구축과 ESG경영을 실행하고, 외부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공시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야 한다.
7	국내에서 ESG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대기업인 경우가 많다. 소규모인 중소기업은 ESG경영을 실행하기 위한 규제와 자원이 부족하여 ESG 정보공시에 소극적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있는 중견기업은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ESG를 기업경영에 반영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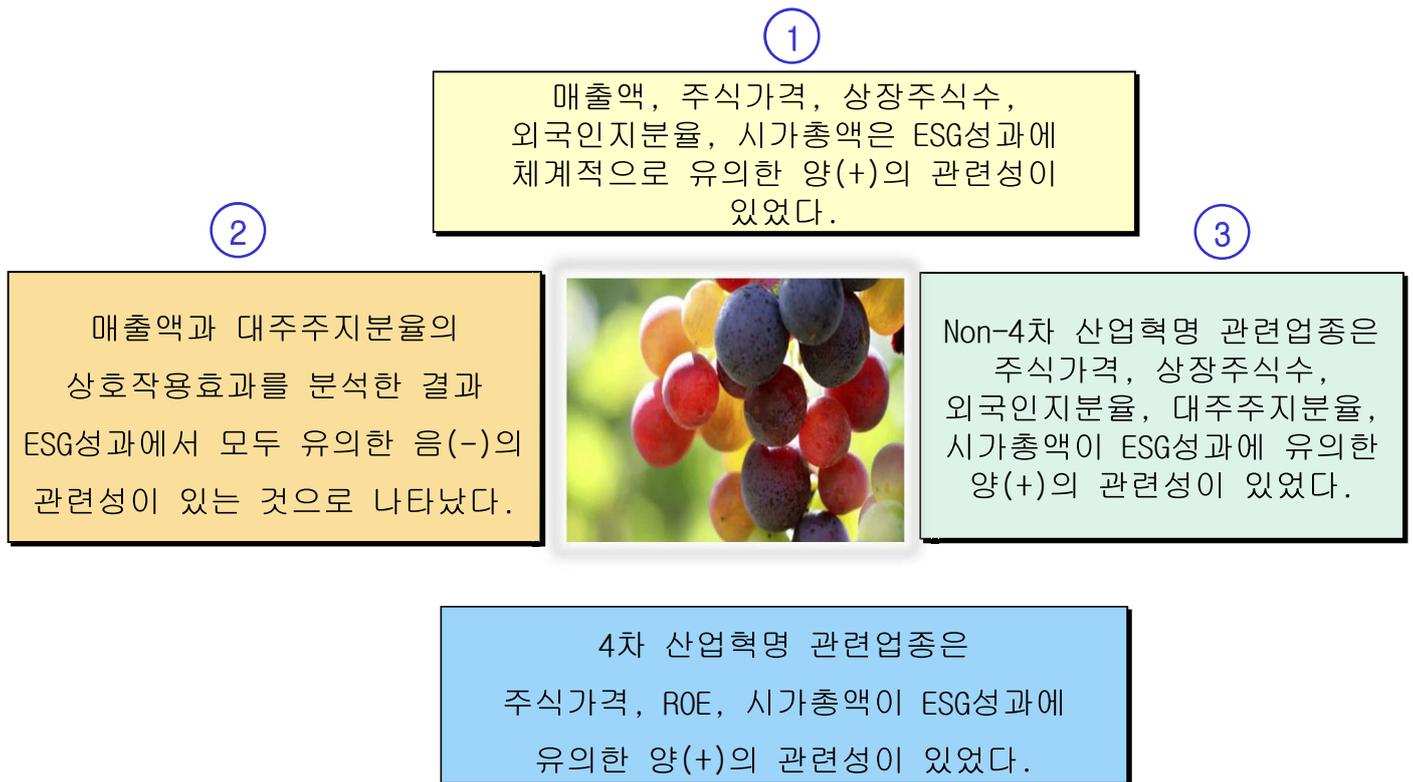
IV. 실증분석

실무적 시사점

구분	실무적 시사점(금융, 정책의 관점)
금융기관과 투자기관의 금융지원	금융기관과 투자기관에서 ESG평가등급이 높은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을 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2019부터 2020년까지 1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는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Zumente & Lace, 2021; Ademi & Klungseth, 2022).
	재무적 중요성이 ESG 점수와 가치에 영향을 미치므로 ESG 공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이 더 나은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다(Madison & Schiehl, 2021).
정부의 정책지원	경쟁 우위가 낮은 기업에서 ESG 정보공시를 늘리고, 비재무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Mohammad & Wasiuzzaman, 2021).
	정부에서도 글로벌환경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ESG성과가 향상시킬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정책지원을 해야 한다.

V. 결론

중견기업의 ESG성과에서 정보공시와 재무적요소의 관련성 연구



1	중견기업의 ESG활동과 기업가치, 재무성과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으면 한다.
2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기업환경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별로 다양한 변수들을 확보하여 재무성과, 기업가치, ESG성적을 다루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3	ESG의 환경성과, 사회성과, 지배구조성과의 개별항목에 대한 ESG성적을 세밀하게 연구했으면 한다.



이는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고,
 지속가능경영을 이루려는 중견기업의 기업가치를 높이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김영환 · 허정하 · 송동엽(2022), “기업의 ESG활동과 자율공시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재무관리연구, 제39권 제1호: 121-144.

김용기 · 박성욱 · 김서현(2023), “ESG와 경영전략이 산업별로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107: 53-76.

김윤경(2020), “기업 비재무정보(ESG) 공시가 재무성과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규제연구, 제29권 제1호: 35-59.

유정민·양동훈, 2022, “ESG 성과는 대리인 비용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가?”, 국제회계연구, 제104권 : 135-167.

이정환 · 조진형 · 장홍준(2022), “기업의 ESG 성과가 비대칭적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재무관리연구, 제39권 제2호: 217-245.

전덕영(2023), “유가증권시장 가족기업의 ESG성과와 기업특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가족기업연구, 제2권 제2호: 45-77.

전덕영(2024),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특성이 ESG성과에 미치는 영향: 가족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경영연구, 제31권 제3호: 27-56.

전진규(2022), “ESG와 투자효율성에 대한 실증연구”, 금융정보연구, 제11권 제1호: 33-52.

최금화(2023), “코스닥 기업의 ESG 활동이 기업 위험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25권 제2호: 683-697.

황성준 · 오상희 · 이진수(2022), “기업의 ESG 성과가 조세회피와 이익반응계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세무회계연구, 74: 291-313.

한국ESG기준원(www.cgs.or.kr)

Ademi, B., & Klungseth, N. J.(2022). Does it Pay to Deliver Superior ESG Performance? Evidence from US S&P 500 Companies. Journal of global responsibility, Vol.13, No.4 : 421-449.

Alareeni, B. A., & Hamdan, A.(2020). ESG Impact on Performance of US S&P 500-Listed Firms. Corporate Govern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in Society, Vol.20, No.7 : 1409-1428.

Behl, A., Kumari, P. S., Makhija, H., & Sharma, D. (2021). Exploring the Relationship of ESG Score and Firm Value Using Cross-Lagged Panel Analyses: Case of the Indian Energy Sector. Annals of Operations Research, 1-26.

Bifulco, G. M., Savio R., Izzo M. F., & Tiscini R. (2023). Stopping or Continuing to Follow Best Practices in Terms of ES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 Exploratory Study of European Listed Companies. Sustainability, Vol.15, No.3 : 1-16.

Buchetti, B. & Arduino, F. R.(2022).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Corporate Governance and ESG Research: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Available at SSRN 4513353 : 1-58.

Elena, V. D. & Renate, B.(2022). an Overview on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ESG-Topics from the Financial Markets Perspective. Manag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Vol.14, No.2: 76-82.

Karoui, A., & Nguyen D. K.(2022). Systematic ESG Exposure and Stock Returns: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1991-2019 Period. Business Ethics, the Environment & Responsibility, Vol.31, No.3 : 604-619.

Maaloul, A., Zéghal D., Ben Amar W., & Mansour S.(2023). The Effect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ESG) Performance and Disclosure on Cost of Debt: The Mediating Effect of Corporate Reputation, Corporate Reputation Review, Vol.26, No.1 : 1-18.

Madison, N., & Schiehl E.(2021). The Effect of Financial Materiality on ESG Performance Assessment. Sustainability 2021, 13, 3652, 1-21.

Mohammad, W. M. W., & Wasiuzzaman S.(2021).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ESG) Disclosure, Competitive Advantage and Performance of Firms in Malaysia. Cleaner Environmental Systems, 2, 100015, 1-11.

Nareswari, N., Tarczyńska-Łuniewska, M., & Bramanti, G. W. (2022). Non-linear Effect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on Corporate Performance(Study in Non-Financial Firms Listed on Indonesia Stock Exchange). Ekonomia Międzynarodowa, 40, 154-170.

Porter, M., Serafeim G., & Kramer M.(2019). Where ESG Fails. Institutional Investor, Vol.16, No.2 : 1-17.

Sciarelli, M., Landi G., Turriziani L., & Prisco A.(2023). Does Corporate Sustainability Mitigate Firm Risk? An Empirical Analysis on S&P 500 Controversial Companies. Social Responsibility Journal, 1-21.

Zumente, I., & Lăce N.(2021). ESG Rating-Necessity for the Investor or the Company?. Sustainability 2021, 13, 8940, 1-14.

The Effects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Financial Factors on ESG Performance of Middle Market Enterprises in Securities Market Moderating Effect of Disclosure of Sustainability Management Report

Jeon, Deok-Young*



* Senior Expert Fellow, Seoul Credit Guarantee Foundation, Ph.D. in Business Administration

4 주제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 정보공시

- 사회** 안성포 교수 (전남대)
발표 김광록 교수 (충북대)
토론 김영주 교수 (부산대)
조웅규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 정보공시

김광록 교수(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 들어가는 말

최근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정보공시는 우리나라 기업은 물론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적인 기업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항이 된 지 이미 오래다. ESG가 기업 경영에 관한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불확실성을 확대한다는 비판도 있으나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이 더 크다.¹⁾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듯 국내는 물론 해외의 주요 기업들은 ESG를 하나의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삼고 있다. 기업에 대한 투자의 가장 중요한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피치와 같은 신용평가 기관은 이미 2019년부터 기업의 신용평가 기준으로 ESG 요소를 고려하여 왔다.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ESG 평가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도 ESG 요소를 투자 결정에 반영하고, 투자운용기금의 50%이상을 ESG 관련기업에 투자한다고 하였다.²⁾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딴 약어이다.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투명하고 윤리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³⁾ 그렇게 보면 ESG 경영의 주요 목적은 투자자와 기업의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등을 통해 인류가 직면하는 위험사회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전 인류의 빈곤을 해소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등 갖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까지 확장된다.⁴⁾ 이

1) Abrams, R., Han, S., and Hossain, M. T., “Environmental performance,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company valuation,” *Journal of Global Responsibility*, 12(4) (2021), pp.400-415; 김성엽, 김영준, “중견기업의 ESG 인식과 평가등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 *환경정책 제32권 제2호* (2024), 158면 참조.

2) KDI 경제정보센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노력, ESG 경영,” 「경제로 세상일기」 (2021. 7.) 참조, available at <<https://eiec.kdi.re.kr/material/conceptList.do?idx=1474>> (최종방문일 2024. 11. 5.)

3) 김광록, “ESG 경영의 관점에서 본 미국의 우리사주제도,” *기업법연구 제35권 제3호* (한국기업법학회, 2021), 10면; 김문선, “2021년 최대 화두 ‘ESG 경영’ 국내기업도 동참,” *Platum* (2021. 02. 19), available at <<https://platum.kr/archives/158209>> 참조.

4) 정준혁, “ESG와 회사법의 과제,” *상사법연구 제40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21), 13면 참조.

러한 사정에서 ESG는 투자자의 직접적인 투자결정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기업도 ESG 경영전략의 구체적인 수립을 통해 자신에 대한 재평가 기회로 삼기도 한다.⁵⁾ 이에 따라 기업은 ① ‘E’ 분야 : 탄소배출 감축,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 절감, 폐기물 관리, 환경 관련 전략 수립 등; ② ‘S’ 분야 : 고용 및 보상 등에 대한 양성평등을 실현, 인재 유치 및 이직률 감소, 산업안전 및 보건, 인권 존중, 사회공헌활동 등; 그리고 ③ ‘G’ 분야 : 윤리 및 부패문제 관리, 비상임이사 보상, 주주권 보장, 이사회 독립성·전문성·다양성 확보,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지배구조 개선을 직접 실천해 나가고 있다.⁶⁾

이러한 ESG 논의는 2004년 UN 글로벌 콤팩트 (UN Global Compact)와 스위스 정부 주도로 진행된 “Who Cares Wins”를 계기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⁷⁾ 이때 국제기구들은 물론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은 한 목소리로 회사의 의사결정 및 투자자의 투자결정에 있어 ESG를 결정 요소에 반영하는 것이 건전한 금융시장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고 하였다.⁸⁾ 이후 2006년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의 주도아래 UN 책임투자원칙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UNPRI)을 발표하면서 여러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분석 및 결정에 ESG 문제를 고려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ESG 투자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었다.⁹⁾ 이러한 사정에서 기업은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주주가치의 지속적인 하락 가능성과 회사의 장기적인 존속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 및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관리 회사인 블랙락 (Blackrock)의 래리 핑크 회장이 지난 2018년 기업의 CEO들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

5) 모건스탠리, 다우존스, 톰슨로이터 등 세계적인 투자정보회사들은 이미 주요 기업의 ESG 등급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음은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도 ESG 경영을 다. 김광록, “ESG 경영의 관점에서 본 미국의 우리사주제도,” 기업법연구 제35권 제3호 (한국기업법학회, 2021), 10면; 김문선, “2021년 최대 화두 ‘ESG 경영’ 국내기업도 동참,” Platum (2021. 02. 19), available at <<https://platum.kr/archives/158209>> 참조.

6) 김광록, 전제논문; 최완진, “ESG 경영과 우리 회사법의 대응,” 2021년 한국상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21. 7. 2.) 3면 이하 참조.

7) Dorothy S Lund & Elizabeth Pollman, “The Corporate Governance Machine”, 121 Colum. L. Rev., 2021 Forthcoming.

8) The Global Compact, “Who Cares Wins - Connec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 2004, p.ii.

9)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rinciple 1: We will incorporate ESG issues into investment analysis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Principle 2: We will be active owners and incorporate ESG issues into our ownership policies and practices. Principle 3: We will seek appropriate disclosure on ESG issues by the entities in which we invest. Principle 4: We will promote acceptance and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s within the investment industry. Principle 5: We will work together to enhance our effectiveness in implementing the Principles. Principle 6: We will each report on our activities and progress towards implementing the Principles.

에서 기업의 ESG 경영이 투자자의 중요한 투자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 오늘날의 전세계적인 ESG 열풍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¹⁰⁾ 그러나 래리 핑크회장은 이미 2016년의 연례 서한에서 ESG 정보 공시가 결국 투자자의 투자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¹¹⁾ 또한, 2019년에는 미국의 주요기업 CEO들로 구성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Business Roundtable, BRT)이 회사의 목적에 관한 성명서 (Statement on the Purpose of a Corporation)를 발표하면서 더욱 굳어졌다. 즉 주요 기업의 CEO들은 BRT를 통해 기업들이 고객, 근로자, 공급자, 지역사회 등 회사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여하고, 주주들에게 장기적 가치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¹²⁾ 물론 최근의 COVID-19 팬데믹을 비롯하여 각종 사회적 대참사를 거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ESG 경영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점도 있다.¹³⁾ 물론 이러한 사회·경제적 환경이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적 요구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도 한 것이 현실이다. 한편, 래리 핑크 회장은 지난 2020년 투자자들과 기업 CEO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는 앞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투자 결정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선언하였고,¹⁴⁾ 2021년 서한을 통해서 ESG 수준이 높은 기업은 그 실적도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업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0)으로 하는 이른바 넷제로(net-zero) 경제에 부합하는 사업모델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¹⁵⁾ 특히 래리 핑크 회장 이러한 계획을 기업의 이사회가 직접 검토하여 회사의 장기전략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면서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투자결정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공언하면서 기업의 ESG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¹⁶⁾ 더욱이 래리 핑크 회장은 2022년에도 연례 서한을 통해 이전의 연례 서한에서 강조한 ESG 문제를 거듭 강조하면서 ESG는 기업의 지속적인 핵심가치임을 확인하였다.¹⁷⁾

10) Vinson & Elkins LLP, "BlackRock's 2018 CEO Letter: A New "Sense of Purpose" For Corporate America?" (LEXOLOGY, January 24 2018), available at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933241e4-a6f7-46af-ab4f-870b21f27e9f>> (최종방문일 2022. 11. 21.)

11) Ibid.

12) Business Roundtable, "Business Roundtable Redefines the Purpose of a Corporation to Promote 'An Economy That Serves All Americans'", 2019 (<https://www.business-roundtable.org/business-roundtable-redefines-the-purpose-of-a-corporation-to-promote-an-economy-that-serves-all-americans>)

13) Bainbridge, Stephen M. "Corporate Purpose in a Populist Era." Neb. L. Rev. 98, 2019, p. 574.

14) BlackRock, "Larry Fink's 2020 letter to CEOs, A Fundamental Reshaping of Finance" available at <<https://www.blackrock.com/corporate/investor-relations/2020-larry-fink-ceo-letter>> (최종방문일 2024. 11. 5.)

15) BlackRock, "Larry Fink's 2021 letter to CEOs," available at <<https://www.blackrock.com/corporate/investor-relations/2021-larry-fink-ceo-letter>> (최종방문일 2024. 11. 5.)

16) Ibid.

17) BlackRock, "Larry Fink's 2022 letter to CEOs : The Power of Capitalism," available at

결국 ESG 문제는 기업이 최근의 급변하는 전 지구적 환경 문제 등으로부터 그 존재 목적인 이윤의 극대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업이 이윤을 전혀 내지 못하게 되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결과를 피하기 위한 방안인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기업의 ESG 경영은 기업이 소위 “지속가능한” 생존 또는 발전을 위한 경영 전략 중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은 1987년 유엔환경계획(UNEP : United Nation Environment Programme)과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¹⁸⁾가 채택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서¹⁹⁾ 처음 사용되었다.²⁰⁾ 이 보고서에서 사용된 지속가능한 발전은 현재 세대의 필요충족을 위하여 자원 및 환경을 이용하더라도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자원의 고갈 및 자연환경의 오염·파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²¹⁾ 이러한 개념이 파리협약²²⁾을 계기로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로 나타났고, 이를 계기로 기업도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이뤄진 것이다. 결국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환경문제를 전제로 사회 및 지배구조 문제에 관한 경영전략을 수립할 것이 요구되었고, 이러한 ESG 경영이 바로 새로운 기업의 핵심가치가 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도 ESG 경영을 공식선언하고 ESG위원회 및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제부터는 “ESG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앞 다투어 참여하는 실정이다.²³⁾ 특히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1년 1월 상

<<https://www.blackrock.com/corporate/investor-relations/larry-fink-ceo-letter>> (최종방문일 2024. 11. 5.)

18) 위원회 의장이었던 노르웨이 총리 출신의 그로 할렘 브룬틀란드(Gro Harlem Brundtland)의 이름을 따서 일명 브룬틀란드 위원회(Brundtland Commission)라고 불렸다.

19) 브룬틀란드 의장의 주도로 1987년 제출된 보고서로서 브룬틀란드 보고서라고도 한다. 이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개념이 처음 사용되었다.

20) 정재규, “상장회사의 ESG공시제도 -모범규준 개정과 ESG 공시현황 및 과제-,” 한국상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상사법학회, 2021), 107면.

21)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을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Humanity has the ability to make development sustainable to ensure that i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브룬틀란드 보고서 제27절 참조.

22) 파리협약은 지난 2015년의 COP21에서 채택된 파리기후변화협약으로서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제한하는 목표를 수립한 것이다. 파리협약은 2020년 만료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협약으로서 2016년 11월 발효되었다. 파리협약은 지난 2020년 만료된 교토의정서가 주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던 것과는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가 감축의무를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그 의미가 크다. 김광록, “미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ESG 정보공시 - Regulation S-K를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제41권 제4호 (한국상사법학회, 2023), 423~424면 참조.

23) 김만기, “SK(☞) C&C, 금호석유화학 종합 ESG 시스템 구축,” 파이낸셜 뉴스 (2022. 11. 22.), available at

장회사에 대하여 ESG에 관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²⁴⁾ 이후 2024년 11월 현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수는 202개에 달해 지난해 161개 보다 약 20%나 증가했다.²⁵⁾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도 ESG 경영의 최대 현안을 환경 문제와 ESG 정보 공시문제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부처별로 제각각인 공시 기준의 통합을 정부 측에 제안하기도 했다.²⁶⁾ 그만큼 ESG 정보공시 문제의 중요성을 우리나라 기업들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물론 ESG 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는 의무기업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상장 대기업으로서 현재로서는 약 210여개 기업이 그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ESG 정보 고시 의무화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한 상황에서 국내 ESG공시 기준을 수립하고 있는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KSSB”)는 지난 2024년 4월 말 공시기준 초안을 공개하였고, 국내 의무공시 기준으로는 우선 기후공시만 의무화하고 이외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은 기업이 선택해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²⁷⁾ 그러나 여전히 금융위원회는 ESG 정보 공시의무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반(反) ESG” 아젠다를 강조하고 있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국내 ESG 공시기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²⁸⁾ 그러나 유럽 연합(EU)을 포함해 ESG 의무공시 제도를 도입한 주요 국가 대부분이 당장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ESG공시를 의무화하는 사정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냥 그 시기를 미룰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당장은 대기업 중심으로 그 공시의무 대상이 될 것이나 중견기업의 입장에서 이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ESG 정보공시에 관한 중견기업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기업, 특히 중견기업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 및 ESG

<<https://www.fnnews.com/news/202211220855054438>> 참조.

24)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합동 보도자료, “기업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2021. 1. 14.) 참조.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까지는 1단계로서 한국거래소에서 마련한 정보공개 “ESG 가이드선”을 통해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2025년~2030년까지는 2단계로서 코스피에 상장한 대규모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를 추진하며, 2030년 이후부터는 3단계로서 전체 코스피에 상장한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 한다고 한다.

25) 한국거래소 「ESG 포털」 자료 참조 <<https://esg.krx.co.kr/>> (최종방문일 2024. 11. 6.)

26) 문광민, “손경식 경총 회장 “ESG경영 최대 현안은 환경·공시”, 매일경제 (2022. 11.22.), available at <<https://www.mk.co.kr/news/business/10540569>> 참조.

27) 김현경,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상장사 17% 늘어...“ESG 공시 의무화 대비”, ESG 경제 (2024. 8. 21.) available at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7433>> (최종방문일 2024. 11. 6.)

28) 오유진, “ESG 공시 최종안 美 대선 이후 발표되나...업계가 전망한 세부 기준은”, 전기신문 (2024. 9. 6.) available at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2702>> (최종방문일 2024. 11. 6.)

정보공시의 입법 및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II.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ESG 정보공시

1. 서 설

ESG는 소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발전을 이끈 미국은 이미 1930년대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 왔다.²⁹⁾ 이후 수 십년에 걸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기업의 ESG 경영과 맞물려 더욱 새롭게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³⁰⁾ 사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이 단순하게 이윤을 창출하고 그것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원칙인 것이다.³¹⁾ 그리고 ESG는 사실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하위 범주로 개발된 개념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³²⁾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구체적으로 ESG를 통하여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ESG 정보공시는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도구가 된다고 할 것이다.³³⁾ 이러한 의미에서 ESG

29) Thomas Lee Hazen, "Social Issues in the Spotlight: The Increasing Need to Improve Publicly-Held Companies' CSR and ESG Disclosure," 23 U. Pa. J. Bus. L. 740 (2021), 741면; Eg., Adolf A. Berle, Jr., "Corporate Powers as Powers in Trust," 44 HARV. L. REV. 1049 (1931) (이 글은 기업은 대주주든 소수주주든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제기함); E. Merrick Dodd, Jr., "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 45 HARV. L. REV. 1145 (1932) 참조 (이 글에서는 기업은 기업의 이윤 창출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음); Milton Friedma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Profits*, THE NEW YORK TIMES MAGAZINE, Sept. 13, 1970 (이 글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주주에게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함) 참조.

30) Thomas Lee Hazen, "Social Issues in the Spotlight: The Increasing Need to Improve Publicly-Held Companies' CSR and ESG Disclosure," 23 U. Pa. J. Bus. L. 740 (2021), 741-742면 참조.

31) John M. Conley & Cynthia A. Williams, "Engage, Embed, and Embellish: Theory Versus Practice in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Movement," 31 J. CORP. L. 1 (2005) 참조. 그리고 이러한 원칙을 주장하는 자들에 의하여 처음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역사 및 그 기원에 대해서는, Mauricio Andres Latapi Agudelo, Lara Jóhannsdóttir & Brynhildur Davidstóttir, "A Literature Review of the History and Evolu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4 J. CORP. SOCIAL RESP. 1 (2019); Eric C. Chaffee, "The Origin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85 U. CIN. L. REV. 347 (2017) 참조.

32) George Kell, "The Remarkable Rise of ESG" FORBES (July 11, 2018), available at <<https://www.forbes.com/sites/georgkell/2018/07/11/the-remarkable-rise-of-esg/#575351571695>> (최종방문일 2022. 12. 12.)

정보공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제대로 적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발전시킨 미국의 경우 ESG 정보공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E”에 대한 정보의 공시를 강조하여 왔다.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한 유럽연합과는³⁴⁾ 달리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 (SEC :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나 연방 증권법 차원에서 아직까지 ESG 정보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³⁵⁾ 그러나 지난 2022년 3월 기후 공시 의무 규정에 관한 초안을 공개한 이후 SEC는 기업 규모에 따라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기후 리스크, 지배구조, 감축 목표와 지표,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여하게 되었다.³⁶⁾ 특히 SEC는 지난 2024년 3월 6일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 최종안”을 통과 시킴으로써 향후 연방 관보를 통해 공표되는 날로부터 60일 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³⁷⁾

2. 우리나라의 ESG 정보 공시의무

세계적인 ESG 열풍에 따라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ESG 경영을 위하여 다양한 입법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공시의무를 기본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³⁸⁾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ESG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 제5호·동법시행령 제168조 제3항 제9호에서 위임을 받은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은 ESG 정보의 공시를 비교적 세

33) Thomas Lee Hazen, “Social Issues in the Spotlight: The Increasing Need to Improve Publicly-Held Companies’ CSR and ESG Disclosure,” 23 U. Pa. J. Bus. L. 740 (2021), 746면 참조.

34) Directive 2014/9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Oct. 22, 2014, art. 1, 2014 O.J. (L 330/1) 1, 5 (EU).

35) 다만, 지난 2022년 5월 25일 SEC는 투자자에게 ESG 펀드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ESG 펀드 및 투자자문사에 대한 공시 규칙 및 보고 양식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SEC, “Enhanced Disclosures by Certain Investment Advisers and Investment Companies about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nvestment Practices,” Press Release No. 2022-92 (2022), available at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22-92>> (최종방문일 2022. 12. 20) 참조.

36) 손서원, “미국 증권위원회의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에 따른 영향,” 삼성증권 ESG 연구소 (2024. 3. 14.) 참조. Available at <https://www.samsungpop.com/common.do?cmd=down&contentType=application/pdf&inlineYn=Y&saveKey=research.pdf&fileName=2020/2024031317050026K_02_04.pdf> (최종방문일 2024. 11. 6.)

37) 송수영, 장윤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최종안 통과,” 법률신문 (2024. 3. 21.) available at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96966>> (최종방문일 2024. 11.6.)

38) 자본시장법은 종래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을 하나로 통합한 법으로서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시장법 제1조.

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 공시 규정은 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녹색성장법”) 제42조 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 ② 동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업, ③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정 기업에 대해 각 법령에 기초한 환경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규정은 제4-3조 제2호에서 미국의 Regulation S-K Item 303과 유사하게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을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ESG 정보의 공시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기업은 ESG 정보의 공시를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해야 할지 아니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통해서 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 사실 기업이 ESG 정보를 어느 경로를 통하여 공시하느냐는 자본시장법상 기업의 책임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도 말이다.³⁹⁾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국민연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와 대여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여 ESG 경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포함시켰다.⁴⁰⁾ 또한 지난 1999년에는 한국ESG기준원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제정 공표하면서 ESG 경영 관점을 전체 모범규준의 원리로 제시한 바 있다.⁴¹⁾ 그리고 2024년 4월 30일 KSSB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 초안을 발표하였다.⁴²⁾ 이렇듯 최근의 ESG 열풍은 그 시작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규범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통일된 ESG 공시 기준이 없고 평가기관마다 제각각 다른 기준을 두고 ESG 평가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대기업 위주로 일부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지속가능성보고서”, “환경보고서”, “사회책임경영보고서” 등의 이름으로 자율적으로 공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⁴³⁾

39) 자본시장법 제162조. 정준혁, “ESG와 회사법의 과제,” 상사법연구 제40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21), 62면 참조.

40)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 제4호; 제4항 참조.

41) 한국ESG기준원은 과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서 올해 초 그 명칭을 “한국ESG기준원”으로 변경하였다. ESG기준원은 지난 1999년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제정하였고, 환경 및 사회 분야 모범규준은 2010년 제정하였다. 그 이후 지배구조 분야 모범규준은 2003년과 2015년에 개정한 바 있으며, 최근인 2021년에는 ESG 전 분야에 대한 모범규준을 개정하였다. 한편, 한국ESG기준원은 지난 2003년부터 상장회사들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등급을 매겨 투자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는 사회책임과 환경경영 등이 포함된 ESG평가도 함께 하고 있으며, ESG 평가 등급은 S, A+, A, B+, B, C, D 7개 등급이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상장회사 950사를 대상으로 ESG를 평가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ESG기준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cgs.or.kr>>.

42)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 참조. <<https://kasb.or.kr/>> (최종방문일 2024. 11. 6.)

43) 경제개혁연구소, “기후변화 관련 기업공시 강화의 배경 및 현황,” 경제개혁리포트 제2021-11호 (2021. 10.

2. 중견기업의 ESG 정보공시

1) 개 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경우 ESG 정보 중에서 “E” 환경에 해당하는 기후 관련 공시를 최우선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ESG 경영의 단초를 제공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문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SEC가 지난 2021년 ESG 정보, 특히 ESG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촉발시킨 “기후변화”에 대한 공시 규정의 개정작업을 시작한 이래, 2022년 3월 비로소 “투자자를 위한 기후 관련 공시 강화 및 표준화(The Enhancement and Standardization of Climate-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에 관한 연방 행정규칙 개정안인 Regulation S-X를 발표하면서⁴⁴⁾ 구체적인 ESG 정보공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지금로서는 ESG 경영 또는 ESG 정보공시 중에서 가장 관심갖고 준비하여야 하는 사항이 ESG 중에서도 “E” 특히 기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해당한다.

그런데 지난 2023년 12월 12월 기준 시가총액 5000억원 이하 코스피 상장사 535곳의 ESG 공시 현황 중 전략과 정보공개, 배출량 관리 및 감축 실적, 에너지절약과 재생에너지 사용, 자원 재활용 및 순환경제 등 4개 부문 20개 세부 지표를 살펴 본 결과는 매우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⁴⁵⁾ 특히 국내 주요 수출 대기업과 연관된 중소·중견기업은 ESG 정보공시뿐만 아니라 ESG 경영 개선도 매우 시급하다는 평가이다.⁴⁶⁾

2)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1) 서 설

05), 51면 참조.

44) 17 CFR §210, 229, 232, 249 -Regulation S-K, Regulation S-X. SEC 보도자료, “SEC Proposes Rules to Enhance and Standardize Climate-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 (2022. 3. 21) 참조.

45) 이승균, “중견기업, ESG 공시 부실...경영 개선 갈 길 멀다.” 환경 ESG 2024년 5월호 (한국경제매거진, 2024), 84면 참조.

46) Ibid., at 86면 참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국내 ESG 정보공시 제도는 아직까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ESG 열풍에 따라 대 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름의 보고서를 통해 ESG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시하여 왔다. 물론 ESG 정보 공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기준 조차도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 하게 마련하고 있다보니 통일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정에서 나름대로 선제 적으로 ESG 정보를 공시하여 온 것이다. 이들 기업들은 GRI,⁴⁷⁾ SASB,⁴⁸⁾ TCFD,⁴⁹⁾ ISSB⁵⁰⁾ 등 다양한 국제 기준을 활용하여 왔는데, 최근 KSSB가 국제적 정합성에 맞 으면서 국내 기업의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초안을 마 련하여 공개하였다.⁵¹⁾ 이번에 공개된 공시기준은 구체적으로 “공시기준서 제1호 지 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공시기준서 제2호 기후 관련 공시 사항,” 그리고 “공시기준서 제101호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 등 세 가지 이다. 이때 공시기준서 제1호와 제2호는 의무공시 사항이고, 제101호는 선택공시 사 항이다. KSSB는 국내·외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 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 공시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이 공시기 준이 확정이 되면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에 대한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

47)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 1997년 네델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설립되었다. GRI 기준은 현재 지속가 능경영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공통표준, 산업영역, 주제표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것은 <<https://www.globalreporting.org/>> 참조.

48)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는 미국 내 기업들이 ESG 정보를 충실히 공시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실적보고서(10-K)에 포함되는 산업별 지속가능성 이 슈들의 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후 SASB는 국제통합보고위원회(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mmittee: IIRC)와 합병 하면서 가치보고재단(VRF)으로 통합되었고, 가치보고재단은 2022년 6 월에 국제회계기준과 통합되었다.

49)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s Disclosures, TCFD)는 2015. 12.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Forum: FSB)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금융섹터가 기후변화 를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50)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서 제정하는 회계기준으로서 IFRS 재단에서는 2021년 11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 Board, “ISSB”)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ISSB는 TCFD,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s), SASB,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 등 기존의 기준제정 전 문기구들의 경험과 축적한 지식을 활용하여 2023년 6월 첫 번째 기준서인 IFRS S1 “일반 요구사항” 및 IFRS S2 “기후 관련 공시기준”(“ISSB 공시기준”)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 기준은 IFRS 회계기준의 핵심개념 을 기반으로 재무제표와 함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설계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공 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최초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51) EU를 비롯하여 미국이나 중국 등의 국가들은 ISSB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자국의 공시기준을 제정하고 있 으며, 우리나라에서는 ISSB 대응조직으로서의 KSSB가 우리나라에 맞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 이다.

(2) 공시기준서 제1호

가. 개 요

공시기준서 1호의 목적은 투자자가 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기업이 공시시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시기준서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은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때 적용되는 개념적 기반과 공시 내용 및 표시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서는 단기, 중기 또는 장기에 걸쳐 기업의 현금흐름이나 자금조달 및 접근성 또는 자본비용 등 기업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서는 시업에 대하여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것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기업은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면 되고, 기후 이외의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는 주제별로 선택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개념적 기반

① 공정한 표시 : 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하여 목적적합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위험 및 기회를 충실하게 표현하여야 하는데, 그 표현은 완전하고 독립적이며 정확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② 보고기업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보고기업은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할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중요한 정보 : 기업은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기준서가 특정 정보의 공시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이를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특정 정보를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거나 불문명하게

기재함으로써 투자자의 투자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이는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된다.⁵²⁾ 중요한 정보는 그렇지 않은 정보와는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중요한 정보가 불분명하게 되는 경우, 정보를 통합해서는 안 된다. 상호 유사하지 않은 중요한 정보는 세분화하여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핵심요소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는 거버넌스, 전략, 위험 관리, 그리고 지표 및 목표를 핵심요소로 한다. 이때 거버넌스는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하고 관리 감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 관련 정보를 말한다. 전략은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근법 관련 정보이다. 위험관리는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로세스 관련 정보를 말한다. 그리고 지표 및 목표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하여 기업이 설정한 목표와 기업의 성과 관련 정보를 말한다.

다. 일반 요구사항

공시기준서 제1호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즉, ① 비교문구 : 모든 값에 대하여 전체 기간에 대한 비교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준수문구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한 기업은 그러한 준수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기후 외 사안 공시 : 기업이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을 공시하기로 한 경우 핵심요소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⁵³⁾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 판단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린 유의적인 판단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⑤ 측정불확실성 : 보고된 값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과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⑥ 오류 :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전에 보고된 정보의 오류와 관련된 비교 정보를 재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한편, 일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기업은 이 기준서 이외에 ① SASB 기준의 공시 주제; ② 물 및 생물 다양성에 대한 CDSB 프레임워크 적용 지침; ③ 투자자 중심의 다른 기준제정기관의 최신 발표문; 그리고 ④ 동종 산업 또는 동일지역에서 운영되는

52)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정의는 K-IFRS의 정의와 같다.

53) 공시기준서 제1호의 부록 E “핵심요소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말한다.

기업들이 식별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공시기준이 없을 때에는 SASB 기준의 공시 주제와 관련된 지표를 참고할 수 있다. 이외에 이 공시기준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① CDSB 프레임워크 적용 지침; ② 투자자 중심의 다른 기준제정기구의 최신 발표문; ③ 동종 산업 또는 동일지역에서 운영되는 기업들이 공시한 정보; 그리고 ④ GRI 기준 및 ESRS를 참고할 수 있다.

(3) 공시기준서 제2호

가. 개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작성하고 보고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개념적 기반과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2호는 제1호의 공시 요구사항 중에서 기후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보다 더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기준서이다. 결국 기업은 공시기준서 제1호와 함께 제2호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기준서 제2호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하여 기업의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그리고 지표 및 목표에 관한 정보의 공시를 요구한다. 이때 기후 관련 위험은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말하며, 물리적 위험⁵⁴⁾과 전환위험⁵⁵⁾을 포함한다. 또한 기후 관련 기회는 기후변화로 인해 기업에 발생하는 잠재적인 긍정적 영향을 말한다.

나. 거버넌스

거버넌스에 대한 기후 관련 재무공시의 목적은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업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의사결정기구 또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54) 태풍, 홍수, 가뭄, 폭염 등과 같은 기상사건으로서 기업의 자산손상이나 공급 등을 양기할 수 있는 위험이다. 또한 기후 패턴의 장기적인 변화로 발생하는 해수면의 상승, 수자원 가용성의 감소 등 기업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55) 저탄소 경제로 전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으로 고탄소 기반 제품에 대한 수요감소나 고탄소 배출 제품의 판매금지 조치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위험은 기업의 운영 비용의 증가나 자산손상, 사업모형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공시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책임이 해당 의사결정기구 또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기업의 운영규정, 위임권한, 직무기술서 및 기타 관련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② 의사결정기구 또는 개인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을 감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량과 역량을 갖추었는지 또는 향후 개발될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③ 의사결정기구 또는 개인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정보를 어떻게 안내받는지와, 얼마나 자주 안내받는지, ④ 의사결정기구 또는 개인이 기업의 전략, 주요 거래에 대한 의사결정, 위험관리 프로세스 및 관련 정책을 감독할 때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어떻게 고려하는지,⁵⁶⁾ ⑤ 의사결정기구 또는 개인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목표의 설정을 어떻게 감독하는지와 그러한 목표를 향한 진척도를 어떻게 모니터링하는 지를⁵⁷⁾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경영진의 역할과 관련한 정보를 공시할 것으로 요구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경영진의 역할이 특정 경영진 수준의 직책 또는 경영진 수준의 위원회에 위임되는지와 그러한 직책 또는 위원회가 어떻게 감독되는지, 그리고 ② 경영진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감독을 지원하기 위해 통제 및 절차를 사용하는지와, 이 경우에 이러한 통제 및 절차가 다른 내부 기능과 어떻게 통합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 전략

전략에 대한 기후 관련 재무공시의 목적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업은 ①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② 그러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사업모형과 가치사슬*에 미치는 현재 영향 및 예상 영향; ③ 그러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전략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⁵⁸⁾ ④ 그러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보고기간의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과 단기, 중기 및 장

56) 의사결정기구 또는 개인이 그러한 위험 및 기회와 연관된 절충(trade-off)을 고려했는지를 포함한다.

57) 관련 성과지표가 보상정책에 포함되는지와 어떻게 포함되는지를 포함한다.

58) 기업의 기후 관련 전환 계획에 관한 정보 포함하며,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응하는 방법, 기후 관련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전략수행을 위해 자원을 조달하는 방법, 이전에 공시한 계획의 진척도에 대한 양적 질적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기에 걸쳐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예상 영향;⁵⁹⁾ ⑤ 기후 관련 변화, 전개 상황 및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 전략과 사업모형의 기후 회복력⁶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라. 위험관리

위험관리에 대한 기후 관련 재무공시의 목적은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는 기업의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⁶¹⁾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특히 기업이 이 정보 공시를 작성하는 경우 공시기준서 제1호와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⁶²⁾

마. 지표 및 목표

지표 및 목표에 대한 기후 관련 재무공시의 목적은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기업의 성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⁶³⁾ 이를 위하여 기업은 ① 산업전반 지표 범주에 관련된 정보; ②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징을 반영하는 사업모형, 활동 또는 그 외의 공통적인 특성과 연관된 산업기반 지표;⁶⁴⁾ ③ 기후 관련 위험을 완화 또는 적응하거나 기후 관련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기업이 설정한 목표, 그리고 법률이나 규제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모든 목표

59) 이때에는 그러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재무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60) 기업은 기후변화가 기업의 전략 및 사업모형에 미치는 영향과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기업이 전략 및 사업모형을 조정하거나 적응시킬 수 있는지 그 역량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시에는 기업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산을 사용하고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지, 자산을 이전 또는 개선해야 한다면 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정보도 포함된다. 또한 기업은 기후변화가 기업의 전략 및 사업모형에 미치는 영향과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기업이 전략 및 사업모형을 조정하거나 적응시킬 수 있는지 그 역량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시에는 기업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산을 사용하고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지, 자산을 이전 또는 개선해야 한다면 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정보도 포함된다.

61) 여기에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기업의 전반적인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통합되고 작용하고 있는지와 그 방식을 포함한다.

62) 예를 들어, 기업은 여러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감독이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각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별도로 공시하는 대신에 통합된 위험관리를 공시함으로써 중복을 피할 수 있다.

63) 여기에는 기업이 설정한 모든 기후 관련 목표, 그리고 법률이나 규제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모든 목표에 대한 진척도를 포함한다.

64) 다만, 기업은 이러한 산업기반 지표의 공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기업이 산업기반 지표를 공시하기로 선택한 경우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발행한 IFRS S2 이행에 관한 산업기반 지침”의 공시 주제와 연관된 산업기반 지표를 참고할 수 있다.

를⁶⁵⁾ 공시하여야 한다.

산업전반 지표 범주에 관련된 정보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성과를 다른 기업의 성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기업이 공통으로 공시하여야 할 7가지의 지표 범주를 제시하고 있다. 즉, ① 온실가스;⁶⁶⁾ ② 기후 관련 전환 위험;⁶⁷⁾ ③ 기후 관련 물리적 위험;⁶⁸⁾ ④ 기후 관련 기회;⁶⁹⁾ ⑤ 자본 배치;⁷⁰⁾ ⑥ 내부 탄소 가격;⁷¹⁾ ⑦ 경영진 보상⁷²⁾ 등이 그것이다.

(4) 공시기준서 제101호

가. 개 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01호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은 기업이 공시기준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보를 공시할 때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이미 공개 중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와 정부 부처 및 위원회 등의 정책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이용자⁷³⁾의 정보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은 이 기준서의 적용여부와 세부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 기준서에서는 개념적 기반과 일반 요구사항을 별

65)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의사결정기구 또는 경영진이 사용하는 지표를 포함한다. 한편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목표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목표인지 순배출량 목표인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순배출량 목표를 공시하는 경우에도 온실가스 총배출량 목표에 대한 정보도 별도로 공시하여야 한다.

66) 보고기간 동안 기업이 발생시킨 스코프 1, 2, 3 온실가스 절대 총배출량을 *이산화탄소환산톤*(tonnes of CO₂ equivalent)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화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의무화하는 경우 그 시기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를 측정하는데 관할 당국 또는 자신이 상장된 거래소로부터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을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것을 요구받지 않는 한,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 회계 및 보고 기준(Greenhouse Gas Protocol: A 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2004)’에 따라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한다.

67) 기후 관련 전환 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금액 및 백분율. 예를 들어 전환위험에 노출된 부동산 담보 규모나 석탄채굴로 인한 매출액 및 수익대비 백분율 등이 해당한다.

68) 기후 관련 물리적 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금액 및 백분율. 예를 들어 기후 관련 물리적 위험에 노출된 실무자산의 비율이나 물부족 지역에서 취수된 물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수익 등이 해당한다.

69) 기후 관련 기회에 부합하는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금액 및 백분율. 예를 들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제품에서 발생하는 수익, 무공해 자량,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량 등이 해당한다.

70)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비하여 배치된 자본적 지출, 자금조달 또는 투자 금액. 예를 들어 연간 수익 대비 저탄소 제품을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비율 등이 해당한다.

71) 기준서는 기업이 내부 탄소 가격의 적용 여부와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이 사용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톤당 가격에 대한 공시 여부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72) 기후 관련 사항이 경영진 보상에 고려되는지와 어떻게 고려되는지, 그리고 당기에 인식된 경영진 보상에서 기후 관련 고려사항과 연계된 보상의 백분율을 공시하여야 한다.

73) 이 기준서 전반에서 “이용자”라는 용어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그 밖의 채권자뿐만 아니라,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부처 및 위원회도 포함한다.

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서에 따른 공시를 작성할 때 공시기준서 제1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개념적 기반

이 기준서는 기업으로 하여금 기준서의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충실하게 표현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 따른 공시 정보는 비교가능하고, 검증가능하며, 적시성 있고, 이해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기업은 이 기준서에 따라 공시하기로 선택한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서는 기업이 공시하는 정보의 유형에 따라 보고 실체가 달라진다고 전제하고 이는 기준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보고기업과는 다를 수 있음을 적고 있다. 즉, 국내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공개 중인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와 함께 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나 규정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르며, 이는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부처나 위원회 등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성립된 법인을 보고실체로 한다.

다. 일반 요구사항

기업은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시와 함께 공시하기 때문에 이 기준서에 따른 공시임을 명확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보고시기는 제1호 및 제2호 공시와 동일한 보고기간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정보의 경우 보고기간이 다를 수 있다.⁷⁴⁾ 또한 기업은 당기에 공시된 모든 정보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⁷⁵⁾

라. 공시 요구사항

74) 이 기준서에 따라 공시하는 정보 중 정부 부처 또는 외부 기관의 검증을 받아 공개되는 정보의 경우, 보고서 일 기준 가장 최근 보고기간의 검증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부 정보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와 다른 보고기간에 대한 정보일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보고기간과 다른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75) 이 기준서는 경과규정을 두어 기업이 이 기준서를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비교정보를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고 있다. 이는 공시 정보의 내용에 따라 당연한 내용이다.

기업이 국내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공개 중인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정보를 각각 선택하여 공시할 수 있다. 즉,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관리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도에서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 ②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제에서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 ③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정보 공개제도에서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 ④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에서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는⁷⁶⁾ 경우에는 환경 관련 정부규제의 준수사항 및 향후 환경개선설비에 대한 중요한 자본지출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그 추정치, 그리고 기업이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거나 녹색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인증·확인 내용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내용; 그리고 기업공시서식 제9-1-2조(직원 등의 현황)에 기술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한편 기업이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기업의 정책 관련하여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직장어린이집,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기업은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노동의 예방을 위한 정보, 기업의 안전 경영에 대한 정보, 기업 내 종업원의 다양성에 대한 정보, 기업이 기업 간의 정당한 경쟁을 추구하여 경제 효율성을 달성하는지에 대한 정보, 기업의 인권 경영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3. KSSB 공시기준에 따른 ESG 정보공시

이번에 KSSB가 공개한 공시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ESG 정보공시를 강화하고 있는 사정에서 국내 기업들에게 국제 경쟁력 및 정합성을 충족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

76)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하며, ① 주권 외의 지분증권, 무보증사채권,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파생결합증권 중 하나를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② 주권이나 위 ①에서 언급한 증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발행인; 그리고 ③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위 ②에서 언급한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을 말한다.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참조.

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⁷⁷⁾ 그러나 이 기준서는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의무화 시기나 대상기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를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 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그 적용 시기나 대상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조기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법에서 구분하는 자산 총액기준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⁷⁸⁾ 그렇다면 자산 총액 기준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을 그 대상기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⁷⁹⁾ 그러나 최근 그 대상기업을 코스피 전체기업과 자산규모 5천억 이상 코스닥 기업만을 의무공시 대상기업으로 하자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경우 기업 수 기준으로 코스피 전체 기업과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코스닥 기업은 전체 상장기업(금융업 등 제외)의 40%에 불과하나, 유의적인 온실가스 배출 기업 대부분을 의무공시 대상으로 포함하게 되면, 지난 2021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대상 상장기업 합산기준 98.9%가 의무공시 대상기업 범위에 포함된다.⁸⁰⁾ 결국 모든 중견기업이 의무공시 대상기업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III. 나가는 말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기 위해서는 공정한 ESG 정보를 적시에 공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그동안 기업의 입장에서 어떠한 정보를 공시하고 어떠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정에서 이번에 KSSB가 공개한 공시기준은 우리나라 기업이 ESG 정보에 대한 공시의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도입시기나 대상기업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번에

77)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 공개,” ESG ISSUE (2024. 5. 8.), available at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346/view.do?nttid=10084016&menuNo=201108&pageIndex=1>> 참조. (최종방문일 2024. 11. 9).

78) 상법은 상장기업의 자산 총액 1천억 및 2조원 기준으로 감사제도 등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79) 그런데 유가증권시장 상장 2조원 이상 기업의 66%가 이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의무공시 대상기업의 범위는 이 기준보다는 훨씬 넓어질 것이다.

80) 이상호, “국내 ESG 공시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발표자료 (2023. 5), available at <<https://www.kcmi.re.kr/flexer/viewdata.php?fid=813&fgu=002003007&fty=004006>> 참조 (최종방문일 2024. 11. 10)

공개된 공시기준에 따라 ESG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견기업은 이 공시기준을 참고하여 향후 ESG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는 경우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 정보공시」 발표에 대한 토론문

조웅규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훌륭한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권종호 회장님과 학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 정보공시에 관하여 통찰력 있는 분석을 해주신 김광록 교수님의 발표를 통해 ESG 정보공시의 연원과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이해하고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근 한국ESG기준원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내 상장회사에 투자한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세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자율 규범입니다.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된 이후로 ESG 이슈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고, 영국과 일본은 실제로 ESG 요소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이슈를 적극 반영하여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ESG 이슈가 반영되어 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졌고, 이에 따라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ESG 이슈를 점검하고 취약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는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 하지는 않았지만 유럽 등 주요 국가의 상황을 고려할 때 조만간 ESG 정보공시 의무화가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도 한국ESG기준원이 기업의 ESG 등급을 평가하고 공개하여 각 기업의 ESG 정보를 중요한 가치로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개별 기업이 ESG 정보공시를 대비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ESG 정보공시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 내지 투자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며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발표문에 관하여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ESG 정보공시 대상 기업의 범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발표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업은 사적인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집단인데 반하여 ESG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회계기준원 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제시한 공시기준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데, 발표자께서는 KSSB의 대상 기업을 어디까지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여쭙습니다.

다음으로, 발표자께서는 KSSB가 공개한 공시기준이 우리나라 기업이 ESG 정보에 대한 공시 의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하셨는데, KSBB가 제시한 공시기준이 기존의 국제기준과 특별히 차별화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는지 의견을 여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견기업이 ESG 공시를 대비하여 준비해야 할 여러가지 분야 중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해당 영역과 이를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EMO

MEMO